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1월 | 2020/01 호

## PCT 웨비나(Webinar) 동영상 강의 추가 안내

아래 주제에 대한 한국어 동영상 및 강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CT 최근 동향 및 2020년 변경사항

해당 웨비나와 기존 웨비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한국어)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해당 발표자료에 안내된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일반에 대한 문의는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시면 됩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sup>1</sup>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2018년 7월-2019년 6월)에 중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2019년 7월-2020년 6월)에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sup>1</sup>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및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 참여관청 소식

### 대한민국 특허청 및 미국 특허상표청

PCT 뉴스레터 2019/07-08 호에서는 대한민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2019 년 7 월 1 일부터 협력심사 시범사업에 신규 국제출원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당 특허청들은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의 이들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출원이 한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양 특허청은 추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협력사업 시범사업 참여 관련 내용은 아래 미국 특허상표청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PTO/bulletins/27230c8>

참여에 관심이 있는 출원인께서는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국제조사 수행 요청을 접수 중인 다른 국제조사기관을 통해 지금도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국제조사기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주심기관으로서의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http://www.wipo.int/pct/en/filing/cse.html)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선출원 사본을 DAS 에서 조회하여 우선권 서류로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인증사본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고,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 국제사무국

기탁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은, 2020 년 1 월 15 일부터, 헤이그 협정(the Hague Agreement)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의 인증사본을 우선권서류로 DAS 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출원인들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589](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details.jsp?id=10589)

## PCT 정보 업데이트

###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에 납부하는 아래의 국내수수료 금액이 2019 년 4 월 1 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안내되지 않은 다른 수수료들은 변동 없음).

출원료:

- 온라인 출원: ..... [변동 없음]

- 오프라인 출원 ..... EUR 25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EP) 부분의 각주 3 번(출원료 관련)과 13 번(수수료의 면제, 감면 또는 반환 관련)도 변경되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럽 특허청의 관련 자료가 출처로 표시되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EP)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실무그룹 보고서

2019 년 6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개최된 제 12 차 PCT 실무그룹의 보고서(문서 PCT/WG/12/25)가 서신 왕래를 통해 채택되어 해당 회차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아래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0410)

### 특정 PCT 서식 개정

국제사무국이 사용하는 PCT 서식의 대다수와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어 2020 년 1 월 1 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 PCT/RO/130 및 156
- PCT/ROIB/198 및 199
- PCT/ISA/215 및 220
- PCT/SISA/512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사무국의 팩스 서비스 제한 결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의 팩스번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서식들은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index.html](http://www.wipo.int/pct/en/forms/index.html)

해당 결정의 배경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9/11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PCT 출원인들(그리고 PCT 관청 및 기관들)이 ePCT 를 통해(<https://pct.wipo.int>) 국제사무국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만에 하나 ePCT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팩스 전송이 불가결한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PCT 웹사이트에 안내된 번호로 국제사무국에 팩스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페이지 하단 "연락처" 참조: [www.wipo.int/pct/ko/index.html](http://www.wipo.int/pct/ko/index.html)(한국어)).

###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 한국어 및 아랍어 안내

PCT 정보 서비스의 연락처, 운영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중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에 이어 이제 한국어와 아랍어로도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ko/infoline.html](http://www.wipo.int/pct/ko/infoline.html) (한국어)

[www.wipo.int/pct/ar/infoline.html](http://www.wipo.int/pct/ar/infoline.html) (아랍어)

자주 묻는 질문(FAQs) 한국어 제공: PCT 제 19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방법 안내

PCT 제 19 조 및 제 34 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방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s)이 영어와 프랑스어에 이어 이제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ko/faqs/amendments\\_19\\_and\\_34.html](http://www.wipo.int/pct/ko/faqs/amendments_19_and_34.html)

## 유용한 도움말

선임된 대리인이 없고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의 서명, 그리고 대표자의 선임

**Q:** 다른 출원인과 함께 국제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 단계에서는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출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방식상의 절차를 저희 스스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해당 출원과 관련하여 제반 서류에 저희 둘 모두가 서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신해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경우 수리관청은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국제출원 출원국의 거주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선임을 항상 요구하는 관청들이 소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각 관청의 요건은, 해당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공한 경우,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각 관청별 부속서 C의 끝부분쯤에 나와 있습니다. ePCT로 출원을 준비하면, 선택된 수리관청이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데 대리인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ePCT 출원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출원인께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관할 수리관청에서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수리관청에 대리인의 선임 없이 출원을 해도 된다고 해도, 특허출원(특히 PCT 출원) 및 특허 청구범위 작성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지식과 전문성의 이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신중을 기하는 방법입니다. 권리가 상실되는 일을 피하도록 그러한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PCT 절차는, ePCT 같은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출원을 제출하고 관리할 때 많은 안전장치가 존재하기는 하나, 경험 많은 이용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일이 지나면 신규 사항의 추가와 같은 특정 출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출원 시에, 발명을 적절히 개시(disclose)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원인에게 전략적 조언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께서 관심을 가지신 국가들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이 많고, 국내단계 진입 절차상,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국내단계 요건에 관한 추가 사항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별로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단계에서 대리인의 선임 없이 출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출원인 본인이나 공동출원인이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단,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PCT 체약국의 국민 및/또는 거주민이어야 함) 국제단계 동안 다른 한 명의 출원인을 대신해 모든 필요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출원서 서식 제 4 기재란에 명시하거나, ePCT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대리인/대표자/통신용 주소(Agent/Common representative/Address for correspondence)"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서 서식에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명시되지 않으면, 출원인 중 한 명이 대표자로 간주됩니다. PCT 규칙 90.2(b)에 의거, 이 "간주된" 대표자는, PCT 규칙 19.1 에 따라, 선택된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갖는,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된 출원인이 맡게 됩니다.

질문하신 출원인이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출원인이면, 나머지 한 분의 출원인이 아래 중 하나를 수행하여 질문자를 대표자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가 대표자로 구체적으로 기재된(또는, 질문자가 해당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자가 출원서 서식에 최초로 기재된 출원인인) 출원서 서식에 서명.
- 질문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별도의 위임장이나 포괄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에 서명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해당 위임장들의 양식 참조: [www.wipo.int/pct/en/forms/pa/index.htm](http://www.wipo.int/pct/en/forms/pa/index.htm)).

그러면 ("간주된" 대표자가 아닌)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로서 출원인께서는 공동출원인을 대신하여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변경 요청과 PCT 제 19 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 국제예비심사 청구와 함께, 국제출원,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를 비롯한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본인이 대표자로 명시되거나 "간주된" 대표자인) 출원서 서식에 서명하셨으나 나머지 출원인께서 서명하지 않았고, 질문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나머지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PCT 규칙 26.2 의 2 의, 적어도 한 명의 출원인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규정에 따라, 출원서 서식의 서명 누락이 흠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주된 대표자로서 질문자께서 해당 국제출원에 관해 취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출원인 두 명 모두에 의한 행위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공동출원인의 서명 없이는 질문자에게 국제출원,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을 취하할 자격이 없습니다(PCT 규칙 90 의 2.5). 이는, 정당하게 선임된 대리인,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 또는 그러한 대표자의 대리인이 나머지 출원인(들)을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취하의 통지에는 모든 출원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원인께서는 국제출원을 하고,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여러 국가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특허가 허여되면 이를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여러 부속서들에 나와있습니다.

대표자에 관한 추가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편 11.005 내지 11.007 및 11.10 내지 11.14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일방향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신규 사업(페루와 유럽 특허청)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일본 특허청

### **PCT 정보 업데이트**

BY 벨라루스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CR 코스타리카 (수수료)

TN 튀니지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2월 | 2020/02호

## 긴급공지 (2020. 3. 30.):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에서의 종이 서류 송부 및 접수에 관한 정보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운영과 전 세계 우편 제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국제사무국(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RO/IB 포함)이 PCT 서식과 서한 등의 PCT 문서의 **서면** 송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출원인 및 대리인과 통신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자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메일로만 문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개별 출원과 관련된 PCT 관련 문서는 [ePCT](#) 또는 [PATENTSCOPE](#)(국제공개 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이메일 주소를 아직 국제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은 PCT 사용자께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해당 정보를 긴급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미결 국제출원 중 한 건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ePCT](#) 상에서 직접 입력(그 국제출원에 대한 해당 접근권한이 있는 경우)
- (ii)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
- (iii)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또는 [pct.infoline@wipo.int](mailto:pct.infoline@wipo.int) 로 이메일 전송
- (iv) [WIPO \(PCT\)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

ePCT 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이 [웹페이지](#)와 ePCT [FAQ](#)(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우편 및 스캔 업무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국제사무국과 통신하는 데 전자적 수단만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사무국과 전자적으로 통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ePCT](#)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및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등록 시스템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기관회의(MIA)

제 27 차 PCT 국제기관회의가 2020 년 2 월 6 일과 7 일 양일간 캐나다 가티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의 요약서(Summary by the Chair)와 작업 문서는 아래 WIPO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00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009)

의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품질 하위그룹(Quality Subgroup)의 회의 결과. 해당 결과에는 2020 년 7 월 1 일 공포될 예정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다음 버전에 발명의 단일성의 변경된 예시를 추가하는 데 대한 동의와, 품질관리에 대한 추가 작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 추가 세부내용은 의장의 요약서를 참고하십시오(문서 PCT/MIA/27/16 의 부속서 II).
- 유럽 특허청이 이끌고 있는 PCT 최소문헌 전담반(TF)의 현황보고서(문서 PCT/MIA/27/11 및 12). 국제기관회의에서는, 해당 전담반이 추가 회동하여 특허문헌 모음(patent collections)과 비특허문헌을 PCT 최소문헌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준 및 표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
- PCT 절차에서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7/10).
- 지정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캐나다 지식재산청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 시범사업에 관한 보고서(문서 PCT/MIA/27/3).
-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조사기관으로 조사료 이체 시 관청들과 국제사무국 간 송금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해 "네팅(netting, 상계)"을 도입한 WIPO 수수료 이체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에 관한 보고서(문서 PCT/MIA/27/7).
-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5 에서 XML 기반의 WIPO 표준 ST.26 로의 이행과, PCT 에서 ST.26 의 시행(문서 PCT/MIA/27/8 및 9).
- 2018 년 7 월 시작된 IP5 관청들 간 협력심사(CS&E)의 제 3 차 시범사업의 운영단계. 2020 년 7 월 1 일부터는 시범사업에 추가 출원을 접수하지 않으며 기관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시범사업의 일부였던 건들의 국내단계 결과를 포함함 (문서 PCT/MIA/27/13).

- 보충적 국제조사제도(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system). 2020 년 9 월에 개최되는 PCT 총회에서 검토할 예정(문서 PCT/MIA/27/5).
- 국제출원 내 도면의 방식상 흠결의 처리 개선을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의 제안(document PCT/MIA/27/14).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들을 국제사무국에 별도의 문서로 송부하는 것에 대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제안(문서 PCT/MIA/27/4).
- 심사관과 출원인, 제 3 자를 포함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집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개선하자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제안(문서 PCT/MIA/27/15).
- 국제기관들이 모든 PCT 체약국의 수리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을 선언하도록 독려하고, 수리관청들이 자국 관청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이러한 기관들을 모두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인도 특허청의 제안(문서 PCT/MIA/27/6).
- 각 기관은 최근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과 수리관청, 국제기관, 제 3 자들이 사용하도록 다양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문서 PCT/MIA/27/2). 또한 각 기관은, 출원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XML 형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등, 효율성 증대와 자동화 확대를 위한 PCT 온라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제사무국에서 파악한 우선과제들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기술 표준 개발에 있어, PCT 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무국과 관청들 간 공조 개선의 필요성에도 동의했습니다.

## 영국: 유럽 연합 탈퇴 후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에 관한 내용

2020 년 1 월 31 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서는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와, 유럽 특허청에서의 영국의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 및 법률 전문가(legal practitioner)의 지위에 관해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영국의 유럽특허기구 회원국 지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유럽 연합과 독립된 국제기구로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른 38 개 체약국이 속한 유럽특허기구 내 영국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특허협약과 PCT 에 따른 절차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서 서식(서식 PCT/RO/101) 내 유럽(EP)의 지정에는 앞으로도 영국(GB)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영국 국민 및/또는 거주자인 출원인도 계속해서 수리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sup>1</sup> 및 국제사무국 외에) 유럽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sup>1</sup>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는 영국 특허청의 기관명

## 영국의 대리인 및 법률 전문가의 지위

유럽 특허청에서의 대리(representation)에 관한 원칙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2 항에 따라 유럽 특허청 대리인 목록에 등재된 영국의 유럽변리사들은,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수립된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국가들, 즉, 독일과 네덜란드 중 어느 곳에서든 업무 허가증이 없어도 구두 변론을 포함한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할 충분한 자격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는 유럽 특허청 대리인 목록에 등재해달라는 영국의 대리인 후보들의 향후 요청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자격을 갖추고 영국에 영업소를 둔, 영국에서 특허 관련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유럽 특허청에서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8 항).

나아가, 영국 대리인들은 유럽특허협약 제 134 조 제 6 항에 따라, 유럽특허협약에 따른 절차가 시행될 수 있는 유럽특허협약의 어느 체약국에든 영업소를 둔 자격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다만, 비자 요건에 관한 규정과 같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영토에의 진입 및 거주를 관장하는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 내용은, 유럽 특허청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PO) 2 월호에 게재될 2020 년 1 월 29 일자 유럽 특허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사항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체약국에서 PCT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종류" 표

PCT 웹사이트에 나온 표들 간 통일성을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되던 상기 표를 이용자 편의를 위해 HTML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표는 2020 년 1 월 2 일부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당 표의 새로운 링크(영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typesprotection.html](http://www.wipo.int/pct/en/texts/typesprotection.html)

### PCT 출원인 가이드 (영어 및 프랑스어, 러시아어 버전)

PCT 출원인 가이드 내, PCT 국제단계가 자세히 설명된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부분의 영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버전이 2020 년 1 월 13 일 업데이트되어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스페인어 업데이트 버전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 한국어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PCT 최근 동향 및 2020 년 변경사항에 관해 2020 년 1 월 31 일 방송된 웨비나의 한국어 PPT 자료와 영상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PATENTSCOPE 소식

### PCT 패밀리 특허

이제 PATENTSCOPE 에서 PCT 출원의 패밀리 특허 관련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구체화(Refine Options)" 아래 새로 생긴 옵션을 선택하면 같은 패밀리에 속한 특허들을 보실 수 있고, "PCT 패밀리(PCT family)"라는 표시가 해당 문서에 나타납니다.

PATENTSCOPE 에 포함된 2 백 7 십만 개가 넘는 고유한 PCT 패밀리 특허 각각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패밀리를 대표하는 주요 출원으로 간주되는 PCT 출원
- PCT 선출원을 명시한 국내출원
- 국내단계 진입 기록
- 해당 PCT 출원의 고유한 최초의 공개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priority application)

### 새로운 선진특허분류(CPC) 검색 필드

또한 PATENTSCOPE 에서는 선진특허분류(CPC2) 검색 필드가 새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PATENTSCOPE 에는 4 천만 건이 넘는 개별 출원에 해당되는 2 억 개가 넘는 CPC 코드가 등재되어 있으며, PCT 출원의 99%가 이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 검색결과 개선

아랍어, 불가리아어, 덴마크어, 에스토니아어, 독일어, 그리스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에 대한 어간추출(stemming)이 개선되어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결과가 제공됩니다. 어간추출은 키워드의 어근 형태를 활용해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electric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electricity", "electric"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서가 검색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items=20](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items=20)

<sup>2</sup> 유럽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동 개발한 특허 분류.

## WIPO 의 새로운 IP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WIPO 는 올해 안에 새로운 디지털 IP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여러분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발명자와 저작자, 개인과 사업체가 자신의 가치 있는 디지털 IP 자산을 지키도록 추가적인 보호(**safekeeping**)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러분의 PCT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마드리드 시스템)이나 디자인 출원(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존의 IP 전략을 보완해줍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영어로 진행되는 해당 설문조사는 완료까지 1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IP 서비스의 활용과, 서비스의 주요 특징, 일부 마케팅적 요소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새로운 서비스가 형태를 갖추는 데 일조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rveys.ipsosinteractive.com/surveys/?pid=S20001884&Qsource=1&id=>

## 유용한 도움말

### "적절한 주의(due care)" 기준에 따른 우선권 회복 요건의 충족

**Q:** 저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고 이틀 뒤에야 국제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단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지정관청들에서는 우선권을 회복하려면 출원인이 해당 정황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수리관청이 이 적절한 주의 기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졌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A:** 우선권 회복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난 PCT 뉴스레터 2015/09 호에 나와있습니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http://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

출원서 서식(PCT/RO/101) 제 6 기재란에 작성하거나 PCT 규칙 26 의 2.3(e)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sup>3</sup> 내에 수리관청에 서신을 보내서 우선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의 기재(statement of reasons)"를 동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26 의 2.3(b)(ii)). 이러한 이유의 기재에는 출원인께서 충족하고자 하는 우선권 회복 기준이 참작되어야 하고, 해당 기재를 뒷받침하는 선언이나 기타 증거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PCT 규칙 26 의 2.3(b)(iii)).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려면(이보다 덜 엄격한 기준인 "비고의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선언으로 충분), 이유의 기재에 출원 지연을 야기한 구체적 사실 및 정황과, 해당 국제출원을 제때에 하기 위해 취한 모든 시정 또는 대안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PCT 규칙 26 의 2.3(a)(i)의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신중한 출원인이라면 취했을 모든 조치를 출원인이 취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신중한 출원인이 기울였을 적절한 주의를 해당 출원인이 기울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수리관청은 각 특정 건별로 사실과 정황을 고려합니다. 출원인이 일반적으로 국제출원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해당 특정 출원을 위해 출원인이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에서는 우선권 기간의 만료까지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과 관계된 출원인의 구체적 행위들을 사실에 기반해 분석할 것입니다.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출원인과 대리인 둘 다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출원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각 수리관청이 자체적으로 건별 분석을 수행하지만,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www.wipo.int/pct/en/texts/pdf/ro.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ro.pdf))에 수리관청이 적절한 주의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나온 예들을 보시면 질문하신 출원인의 상황에서 이유의 기재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해당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가 있다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권 기간 충족 실패의 원인이, 대리인이나 출원인의, 특정 행정업무를 맡은 행정직원(조수(assistant)나 법률사무소 직원(paralegal) 등 변리사가 아닌 자)의 인적 과오에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신중한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신뢰할 수 있고 숙련되며 적절히 훈련되고 감독받은 직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훈련하며 그러한 직원의 업무수행을 신중히 감시한다. 국제출원의 처리 예정 기록(docketing), 모니터링, 작성 또는 제출 시 조수가 저지른 인적과오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조수의 관리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본 특정 건에 있어 우선권 기간 내 출원하지 못한 것이 단 한 번의 인적 과오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보통 이유의 기재에 해당 조수가 해당

<sup>3</sup> PCT 규칙 26 의 2.3(e)에 따른 기한은 우선권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두 달인데, 이보다 빨리 국제출원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이 됨.

특정 업무를 맡은 헛수와, 해당 조수에게 제공한 훈련과 감독의 수준과, 해당 조수가 과거에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기재한다."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166M(f) 단락]

우선권 기간 내 국제출원을 하지 못하는 통상적인 이유의 추가적인 예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http://www.wipo.int/pct/en/texts/ro/ro166a_166t.html#_166m)

개인 발명자나 중소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이 분야의 모범사례에 상응하는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주의 환기(reminder), 감독 및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에서 출원인이 제공한 이유의 기재와 증거가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리관청은, 우선권 회복 신청을 거절하기 전에 서식 PCT/RO/158(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 통지 및/또는 선언서 또는 기타 증거 제출 요구서)을 발행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우선권 회복 거절 의사를 알리고 출원인이 해당 관청이 정한 (추가) 기한 내에 의견, 증거 또는 선언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관청은 접수된 답변을 토대로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고 서식 PCT/RO/159(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유가 불충분하면 상기된 바와 같이 보충이 가능하지만, PCT 규칙 26 의 2.3(e)에 명시된 기한 동안 이유의 기재가 아예 제공되지 않으면, **보통 수리관청에서는 이유의 기재 누락을 우선권 회복 신청 거절의 이유로 들며 신청을 거절**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이 우선권 회복 신청 관련 증거로 수리관청에 제출된 기밀문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우려되시면, 해당 수리관청은, 기밀문서로 간주되는 그러한 증거를 출원인의 이유를 포함한 신청의 수리 또는 독자적 결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정보는 결과적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PCT 규칙 26 의 2.3(h) 의 2)). 해당 규칙에 적용 가능한 정보의 예로, 질환의 성질을 설명하는 진단서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이름과 같은,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 지연과 관련된 사람의 신상명세가 있습니다. 수리관청이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데 불필요한 그러한 기밀정보를 처음부터 해당 문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청들이 우선권 회복 신청을 수리하고, 하나의 기준만 적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우선권 회복 신청 시 해당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한국어)

출원인은, 지정관청이 해당 신청을 수리하고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단계에서도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9 의 3.2). 이러한 신청은 PCT 제 22 조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으로부터 한 달 내에 각 해당 지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링크의 우선권 회복 표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우간다 등록서비스국, 국제출원을 전자적 형식으로 접수 및 처리 예정

유럽 특허청: **PCT 조사료 및 예비심사료 75% 감면 자격 조건 변경**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아일랜드: **PCT 출원을 국내특허출원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한 신규 법령**

### PCT 정보 업데이트

AZ 아제르바이잔 (수수료)

CR 코스타리카 (수수료 감면)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ID 인도네시아 (통신 수단, 수수료)

IT 이탈리아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KG 키르기스스탄 (수수료)

MA 모로코 (수수료)

NL 네덜란드 (팩스번호)

RO 루마니아 (수수료)

SA 사우디아라비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TN** 튀니지 (수수료 발효일 - 내용정정)

**UG** 우간다 (전자출원)

조사료 (유럽 특허청 및 이스라엘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예비심사료 (유럽 특허청)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유용한 도움말" 색인 일본어로 제공

**PATENTSCOPE** 소식

일본의 국내 특허문헌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3월 | 2020/03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지난 호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 국제사무국 및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 지속

2020년 3월 17일부터 WIPO는 직원 대다수의 원격근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과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PCT 출원의 제출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지속합니다.<sup>1</sup> 추가 정보는, 아래 보도자료 PR/847/202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4.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4.html)

본인의 PCT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관청들에도 확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안내한 바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호 뉴스레터의 "유용한 도움말"에서, 처리할 용무가 있는 PCT 관청이 특별 휴무에 들어가 기한을 놓치거나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회사가 강제 임시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1</sup> (역주) 국제사무국은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 발행 이후, 종이 서류의 서면 송부는 중단하였으며, 본인의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긴급하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품질보고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각자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sup>2</sup> 아래에서 2019 년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http://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 2019 년 PCT 연례보고서 - 요약본

"2019 년 PCT 연례보고서 - 요약본"은 PCT 이용의 주요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19 년 PCT 연례보고서에 보고된 통계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자료로, 이제 아래에서 10 개 공개언어 모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30](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430)

영어 외 다른 언어는 페이지 우측에서 해당 언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2020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

2020 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의 테마인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은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녹색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두는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직접 개발한 획기적인 친환경 혁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혁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신 경우에 한해, [WorldIPDay@wipo.int](mailto:WorldIPDay@wipo.int)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을 WIPO 와 함께 탐구해보십시오.

지난 2000 년 WIPO 회원국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1970 년 WIPO 설립협약(WIPO Convention)이 발효된 날인 4 월 26 일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로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전 세계의 다른 이들과 함께 혁신과 창의성을 고무하는 데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sup>2</sup>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26 및 21.27 에 따름.

## 유용한 도움말

###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해결책

**Q:**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인데, 곧 출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출원과 함께, 계류 중인 PCT 출원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19 (COVID-19) 팬데믹이 미칠 영향과, 아래 중 하나의 상황에서 특정 PCT 기한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출원 전인 출원과 계류 중인 PCT 출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 처리할 용무가 있는 PCT 관청이 특별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 저희 법률사무소가 강제 임시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본 유용한 도움말에서는 상기 시나리오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처리할 특정 용무가 있는 수리관청 또는 기타 PCT 기관이나 국제사무국이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

**PCT 규칙 80.5(i):**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SISA),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사무국 또는 지정/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관청 또는 정부 간 기구가 특정일에 예외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해당 날짜에 만료되는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PCT 제 22 조 및 제 39 조에 따른 기한을 포함한) 모든 PCT 기한은 PCT 규칙 80.5(i)에 따라, 해당 관청이나 기관이 열리는 날인, 그 익일까지 연장됩니다.

PCT 규칙 80.5(i)은 PCT 에 따른 모든 기한에 적용되며,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의 상응 규정이 우선권기간에 적용됩니다(아래 파리협약 제 4 조(C)(3) 참고).

**PCT 제 8 조 및 파리협약 제 4 조(C)(3):** (신규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출원을 출원하지 못한 경우, 파리협약 제 4 조(C)(3)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개월의 기한이 지난 후에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관청이 휴무일인 경우가 아니라 관련 수리관청이 휴무일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대리인이나 출원인의 직장이 임시 휴무인 경우

**PCT 규칙 26 의 2.3<sup>3</sup> 및 49 의 3.2<sup>4</sup>:** 12 개월의 우선권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우선권 회복"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12 개월의 파리협약의 우선권기간을 놓친 출원인에게 우선권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PCT 규칙 26 의 2.3 및 49 의 3.2 참고).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결정은 수리관청이나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이 건별로 내리는데, 특히 출원인이 "적절한 주의(due care)" 기준이 충족된다는 점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세한 해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들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한국어) 참조).

<sup>3</sup> (역주) PCT 수리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up>4</sup> (역주) PCT 지정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T 규칙 82 의 4:**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용무를 처리하는 데 적용 가능한 기한을 놓친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PCT 규칙 82 의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은 해당 규칙에 기재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허용합니다. 해당 규칙의 혜택을 받으려면 출원인은 그러한 취지의 증거를 해당 기한이 만료된지 6 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제시하고, 그때까지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기한 충족 실패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관청,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이 내립니다. 단, 해당 규칙은 우선권기간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CT 규칙 49.6<sup>5</sup>:** PCT 출원인이 상기된 이유로 해당 기한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PCT 규칙 49.6 에 따라 해당 지정관청에서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정관청이 건별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며, 해당 관청이 적절한 주의(due care)나 비고의성(unintentionality)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관청은 해당 규칙에 대한 상충사실을 통보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한국어) 참조).

놓친 기한이 지정 또는 선택관청에서 국내단계에서 처리될 일과 관련된 것이면,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해결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PCT 규칙 82 의 2.2 및, 그러한 국내법/지역법의 예로, 유럽 특허청에서의 "추가 처리(further processing)" 신청(EPC 규칙 135) 참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의 각 국내편을 보시거나 해당 국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PCT 규칙 80.5(ii) 및 80.6, 82.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p>5</sup> (역주) PCT 지정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른 권리회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PCT-SAFE** 사용을 중단한 관청들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GB** 영국 (위치 및 우편주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A** 모로코 (수수료)

**NZ** 뉴질랜드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특별요건)

**SA**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번호)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보충적 국제조사 관련 수수료 (유럽 특허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유럽 특허청)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 (스페인어 버전)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4월 | 2020/04 호

## 코로나 19 관련 PCT 웨비나(Webinar) 동영상 강의 추가 안내

아래 주제에 대한 한국어 동영상 및 강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보건 위기가 PCT에 미치는 영향

이번 자료에는 코로나 19 보건 위기와 관련하여, PCT 업무 현황 및 팬데믹으로 인해 제출할 서류나 수수료 등의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웨비나와 기존 한국어 웨비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해당 발표자료에 안내된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WIPO의 PCT 웨비나 일반에 대한 문의는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시면 됩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사무국,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규정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

국제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해석에 대한 성명과 PCT 관행에 대한 변경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 (한국어)

해당 성명은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이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82의 4.1의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 규칙은 불가항력의 사유("전쟁, 혁명, 시민

소요, 파업,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해 PCT 기한(서류 제출 및/또는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의 입장은 현 팬데믹을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을 비롯한 WIPO 국제사무국은 코로나 19 관련 문제를 이유로 한 모든 PCT 규칙 82 의 4 신청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것이며, 바이러스가 이해 당사자의 거주지, 영업소 혹은 체류지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PCT 규칙 82 의 4.1 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중 하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PCT 조약 제 14 조(3)(a))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해당 국제출원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그러한 모든 통지서(서식 PCT/RO/117)의 발급을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수리관청이 이와 같은 관행을 채택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WIPO 국제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 적어도 한 달(이 기간은 추가로 연장 가능)은 더, 위 언급된 통지서를 만료 시점이 2 개월 이상 지난 기한과 관련해서만 발급할 것
- 수리관청이 PCT 규칙 16 의 2.2 에 따른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

###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PCT 출원 처리에 미치는 영향

PCT 뉴스레터 2020/03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포함)은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우편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통신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련 문서를 오직 이메일로, 각 국제출원에 대해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PCT 관련 문서는 이메일 외에 ePCT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원이 공개되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PATENTSCOPE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PCT 출원에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PCT 사용자께서는 계속 중에 있는 본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하루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연락용 이메일 주소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한국어)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PCT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무국과 통신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호의 "유용한 도움말"에 나온, PCT 관련 문서의 서면 송부 및 수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내용과,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3 호의 "유용한 도움말"에 나온,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규칙 82 의 4.1 의 규정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국제사무국의 해석에 관한 내용은 상기 별도의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IP 관청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년 PCT 국제출원

2019 년에도 PCT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65,800 건<sup>1</sup>에 달하는 기록적 수준의 PCT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2018 년 대비 5.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58,990 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러 최다 출원국에 등극했습니다. 미국은 1978 년 PCT 운영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PCT 시스템 최대 사용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올해에는 57,840 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2 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2019 년도 PCT 통계가 발표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WIPO 를 통한 최다 국제특허출원국으로 급성장한 것은 혁신의 중심의 동쪽을 향한 장기적인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시아 소재 출원인들이 전체 PCT 출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 년에 WIPO 에 접수된 중국의 출원은 276 건이었습니다. 2019 년 해당 수치는 58,990 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20 년 만에 200 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PR/2020/848)

2018 년과 마찬가지로 일본(52,660 건), 독일(19,353 건), 대한민국(19,085 건)이 각각 3 위, 4 위, 5 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소재 출원인들이 2019 년 전체 PCT 출원의 52.4%를 차지했으며, 유럽은 23.2%, 북미는 22.8%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58,990 건	22.2%
2. 미국	57,840 건	21.8%
3. 일본	52,660 건	19.8%
4. 독일	19,353 건	7.3%
5. 대한민국	19,085 건	7.2%
6. 프랑스	7,934 건	3.0%
7. 영국	5,786 건	2.2%
8. 스위스	4,610 건	1.7%
9. 스웨덴	4,185 건	1.6%
10. 네덜란드	4,011 건	1.5%

<sup>1</sup> 2019 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확인 가능.

상위 15 개 국가들 중 2019 년 두자리수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터키(+46.7%), 대한민국(+12.8%), 캐나다(+12.2%), 중국(+10.6%)입니다. 터키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상위 15 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상위 15 개 국가들 중 독일(-2%)과 네덜란드(-3%) 두 국가만 출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8 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20/848 에 나온 부속서 1 을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5.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5.html)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러지는 2019 년 4,411 건의 공개출원을 기록하며 3 년 연속 최다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일본), 삼성전자주식회사(대한민국), 퀄컴(미국),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중국)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 위권 출원인들과 2019 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1.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 4,411 건 |
| 2.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 2,661 건 |
| 3.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한민국)   | 2,334 건 |
| 4.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 2,127 건 |
| 5.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 리미티드(Guang 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중국) | 1,927 건 |
| 6.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 1,864 건 |
| 7.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 1,698 건 |
| 8. 핑안 테크놀로지 (선전) 컴퍼니 리미티드(Ping An Technology (Shenzhen) Co., Ltd, 중국)                       | 1,691 건 |
| 9. 로버트 보쉬 코퍼레이션(Robert Bosch Corporation, 독일)   | 1,687 건 |
| 10.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대한민국)  | 1,646 건 |

상위 10 위 출원인 중 여섯은 주로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출원했는데, 에릭슨,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화웨이 테크놀러지, 엘지전자, 삼성전자, 퀄컴이 이에 포함됩니다. 상위 50 위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 교육기관의 출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470 건의 공개출원으로 1993 년부터 계속해서 PCT 시스템 최대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 위 교육기관 중 다섯은 미국, 넷은 중국, 하나는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출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3).

기술 분야별 PCT 출원을 살펴보면, 컴퓨터 기술이 전체 PCT 공개출원 중 8.7%를 차지했고, 디지털 통신(7.7%), 전기기계(7%), 의료기술(6.9%), 측정(4.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 위의 기술 분야들 중 반도체(+12%)와 컴퓨터 기술(+11.9%)이 2019 년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4).

2019 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PCT 연보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PCT 규칙 20.8(a 의 2) 및 (b 의 2)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

지난 2019 년 10 월 PCT 총회에서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이 다수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는 국제출원의 요소나 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제출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PCT 규칙 20.5 는 출원의 누락 부분을 제출하는 경우를 다룸).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따라,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올바른 요소나 부분으로 교체하거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한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규칙은 아래의 경우를 다룹니다.

- 모든 출원일 요건이 충족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b))
- 모든 출원 요건이 충족된 날이 지난 뒤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c))
- 선출원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의 유효한 인용에 의한 보완(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d))

또한, 새로운 PCT 규칙 20.8(a 의 2)는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9 년 10 월 9 일 현재, 규칙 20.5 의 2(a)(ii) 및 (d) 중 어느 하나가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수리관청이 2020 년 4 월 9 일까지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때에는, 해당 규칙이 해당 국내법과 상충하는 한 해당 규칙은 해당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PCT 규칙 20.8(b 의 2)도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국내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9 년 10 월 9 일 현재, 규칙 20.5 의 2(a)(ii) 및 (d) 중 어느 하나가 지정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지정관청이 2020 년 4 월 9 일까지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때에는, 해당 규칙이 해당 국내법과 상충하는 한 해당 규칙은 해당 지정관청에 대하여 조약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PCT 규칙 20.8(a 의 2)에 따른 통지**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그리고/또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거나,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a)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L 칠레

CU 쿠바

- CZ 체코
- DE 독일
- FR 프랑스
- ID 인도네시아
- IT 이탈리아
- KR 대한민국
- MX 멕시코

나아가, 유럽 특허청은 해당 규칙들이 유럽특허협약(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EPC)의 법적 틀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20.8(b 의 2)에 따른 통지**

아래 국가의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거나,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b)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L 칠레
- CN 중국
- CU 쿠바
- CZ 체코
- DE 독일
- ID 인도네시아
- KR 대한민국
- MX 멕시코
- TR 터키

나아가, 유럽 특허청은 해당 규칙들이 유럽특허협약의 법적 틀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상황 때문에, 국제사무국은 많은 PCT 관청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되는 경우, 해당 기한이 연장되어 해당 관청이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다시 열리는 날인,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각 관청의 이례적 휴무 여부는 아래 "IPO 휴무일"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http://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상기 페이지에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휴무일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2018년 7월-2019년 6월)에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2019년 7월-2020년 6월)에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PCT 뉴스레터 2020/01 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 이들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출원의 한도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양 특허청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참여관청 소식

### 유럽 특허청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서 유럽 특허청이 2019년 7월 1일부터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제 유럽 특허청은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 해당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출원의 할당량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특허청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참여에 관심이 있는 출원인께서는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국제조사 수행 요청을 접수 중인 다른 국제조사기관을 통해 지금도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국제조사기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주심기관으로서의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http://www.wipo.int/pct/en/filing/cse.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인도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2020 년 6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CHF
오스트리아 특허청 .....	ZAR
캐나다 지식재산청 .....	CHF
유럽 특허청.....	ZAR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	CHF, EUR, USD
인도 특허청.....	CHF, EUR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CHF
대한민국 특허청 .....	CHF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CHF, EUR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T, AU, BR, CA, EP, IN, KR, RU, SG) 업데이트)

###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20 년 6 월 1 일부터,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c)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SG) 업데이트)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스라엘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20 년 6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에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취급료 금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AUD
캐나다 지식재산청 .....	CAD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SGD
이스라엘 특허청 .....	ILS

대한민국 특허청 ..... KRW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I 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CA, IL, KR, SG)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코로나 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제사무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안내하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covid\\_19/covid\\_update.html](http://www.wipo.int/pct/ko/covid_19/covid_update.html)

해당 페이지에는 아래 내용에 대한 링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CT 및 기타 WIPO 가 운영하는 IP 시스템에 따른 WIPO 의 업무 지속
- 국제사무국의 종이 문서 송부 중단 및 정보의 전자적 송부 필요성
-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PCT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해결책
- IP 관청들의 휴무일

추가 관련 정보가 안내되는 대로 새로운 링크들이 추가됩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과의 종이 서류 송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에서 종이 서류 송부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모든 10 개 PCT 공개언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영문 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언어 선택. 아래 한국어 페이지 참고).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한국어)

상기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출원 처리에 미치는 영향" 단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ATENTSCOPE 소식

### WIPO, 미국 국립보건원(NIH) 데이터베이스에 검색 가능한 화학식 수백만 개 제공

WIPO 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무료 화학 데이터베이스인 PubChem 에 1,600 만 개의 화학식을 제공하여 유효화합물(hit compound)들이 추가 스크리닝에 있어 우선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PubChem 에서 WIPO 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 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화학정보학, 화학생물학, 의약화학, 신약개발(drug discovery) 등의 여러 연구분야에 대해 핵심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InfoChem 과의 협업을 통해 PATENTSCOPE 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화합물 검색을 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0/news\\_0002.html](http://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0/news_0002.html)

## 2020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

PCT 뉴스레터 2020/03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4 월 26 일은 예년처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테마인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은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녹색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두는 것입니다.

직접 개발한 획기적인 친환경 혁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혁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신 경우에 한해 [WorldIPDay@wipo.int](mailto:WorldIPDay@wipo.int)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을 WIPO 와 함께 탐구해 보십시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2020/1 호)에 실린 아래 기사에 대한 링크가 PCT 홈페이지 내 "PCT 특별기사"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http://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특허 동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프리랜서 작가 제임스 노턴(James Nurton)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네 가지 주요 분야, 즉 태양에너지,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전기(연료전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에너지와 관련된 2002 년 이후의 PCT 공개출원 건수 추이를 분석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살펴봅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http://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20/1 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2020/01/](http://www.wipo.int/wipo_magazine/en/2020/01/)

## 유용한 도움말

### PCT 관련 문서의 서면 송부 및 수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Q:** 저는 지금까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서면으로만, 또는 국내 수리관청에 이메일 주소 제공이 불필요한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PCT 출원을 해왔습니다. 이제껏 PCT 관련 통신을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만 받아 보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출원서 서식에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모든 통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저의 진행중인 출원과 관련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A:**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업무와 전 세계 우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원인(또는 출원인의 대리인)께서는 PCT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문서가 우편으로 도착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의 역할을 하는 국제사무국 포함)에서도 PCT 관련 문서를 더 이상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을 예정이니,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무국과 통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계속 PCT 관련 통지를 받으시려면,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에 관한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하루빨리 국제사무국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 ePCT 를 통해 국제사무국으로 문서 업로드

아직 WIP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들어 WIPO 의 ePCT 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국제사무국에 전자적 형식으로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두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0](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0) (계정 만들기)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문서 업로드하기)

그리고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 중 하나에 대해 서한 한 통을 업로드하여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PCT 통지를 보낼 이메일 주소의 기록을 요청하고, 이러한 변경이 같이 적용되는 나머지 출원들의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문서 유형으로 "(복수의 국제출원에 대한) 규칙 제 92 조의 2 에 다른 변경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이용

아직 ePCT 시스템 로그인용 WIPO 계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당장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아래에서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전자적(PDF)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lang=ko> (한국어)

ePCT 에 대해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사용시 비슷하게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 중 하나에 대하여, 이메일 주소의 기록이 함께 적용되는 나머지 출원들의 목록이 포함된 서한 한 통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는 종이 문서 송부의 유용한 전자적 대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ePCT 시스템을 만에 하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이용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에는 ePCT 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없고,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기 방법들 중 하나로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시면, 상황의 긴급함을 감안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 pct.eservices@wipo.int 또는 pct.infoline@wipo.int 로 이메일 송부
- 아래 WIPO(PCT) 고객용 "문의하기(Contact Us)" 페이지 이용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pct>

향후 신규 국제출원을 제출할 계획이 있으시면, 출원서 서식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국제사무국,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해 발행되는 통지를 해당 기관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당 박스에 체크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출원서 서식 제 4 기재란).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나 다른 관할 참여 수리관청에<sup>2</sup> 출원 시 ePCT 를 통해 국제출원을 제출하여 해당 출원이 해당 관청에 즉시 접수되고 우편 서비스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의 국내 또는 지역 수리관청이 ePCT 출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누구나, 국가안보 관련 문제가 없다면, PCT 체약국의 거주자나 국민에 대한 관할 수리관청이 되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19.1(a)(iii)). ePCT 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국제사무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참고 자료에 기반한 많은 검증 기능을 내장해 국제출원 시, 또는 사후 조치에 있어 오류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ePCT 외에 본인의 관할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다른 전자 출원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PCT 를 통한 국제출원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ePCT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69](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69)

PCT 관련 문서는 이메일로 송부될 뿐 아니라 ePCT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에 접근하려면, **해당 출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서 기록하고 나서** 강력 인증을 설정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ePCT 접근권한(eOwnership)을 요청해야 합니다.

WIPO 계정을 생성하고 ePCT 를 처음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pct.eservices@wipo.in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한 통지를 PATENTSCOPE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급적 아래 내용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sup>2</sup> 참여관청 목록 확인: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EFilingServers.xhtml>

<sup>3</sup> 대개의 경우 eOwnership 을 요청하면 서식 PCT/IB/345 를 통해 확인코드가 송부되어야 하므로, 이메일 통지 송부를 위해 이메일 주소가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이용하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선권서류를 전자적으로, 쉽게,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9/11 및 12 호 참조).
- 자필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획득하기. ePCT 사용의 이점 중 하나는 외부서명 기능을 통해 서명을 전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내용은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92](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92) 참조).
- 전자적으로 수수료 납부하기. WIPO 는 WIPO 당좌계좌(WIPO Current Account) 대차(debit) 요청, (특정 상황시)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또는 (유럽에 한해) 우편대체 송금(postal transfer)으로 납부된 수수료만 수령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한 통지의 수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국제사무국과의 전자적 통신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covid\\_19/communication.html](http://www.wipo.int/pct/ko/covid_19/communication.html) (한국어)

국제사무국은 PCT 에 따른 국제기관들을 포함한 PCT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들도 가급적 ePCT 나 전자데이터교환(EDI) 같은 전자수단을 통해 국제사무국과 통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2020 년 3 월호(2020/03 호) "유용한 도움말"에 (현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초래되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신규 일방향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노르웨이, 중국)

### **PCT 정보 업데이트**

여러 수수료 변동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기업및지식재산위원회(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슬란드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BR** 브라질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DK** 덴마크 (국가안보 관련 규정, 임시 보호(provisional protection), 대리인 관련 요건,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IN** 인도 (전화번호, 수수료)

**PL** 폴란드 (이메일 주소, 필요한 사본 수)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5월 | 2020/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코로나 19 위기가 PCT 에 미치는 영향

최근 WIPO 의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 직원들이 “코로나 19 보건 위기가 PCT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녹음했습니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PCT 시스템 사용자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며, 다양한 권장절차와 PCT 출원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 가능한 보호장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25 분짜리 웨비나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쉽게 등록하신 후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페이지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링크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한국어)

영어 등 다른 언어는 페이지 상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19 IP 정책 트래커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여러 국내 및 지역 지식재산(IP) 관청들이 출원인과 권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 기한을 포함한 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5일 WIPO 는 WIPO 회원국들이 시행 중인 코로나 19 관련 IP 정책 변동사항이나 기타 조치를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틀인 코로나 19 정책 트래커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트래커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covid19-policy-tracker/#](http://www.wipo.int/covid19-policy-tracker/#)

메인 페이지인 “IPO Operations”에 나온 표에는 특정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이 시행 중인 운영상의 변동사항 및 조치들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표 오른쪽 열의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국가 또는 관청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트래커에는

WIPO 의 현황 및 단행 조치에 대한 내용과 여러 WIPO 제공 서비스(PCT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 및 중재/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단체, 기업 및 기타 권리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코로나 19 IP 정책 트래커의 “Legislative and reg. measures” 및 “Voluntary Actions”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IP 정책 트래커는 IP 관청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래 관청들의 휴무와 휴무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용이 괄호 안의 날짜의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 AG 엔티가 바부다 지식재산통상청(ABIPCO)(2020 년 5 월 14 일)
- CO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2020 년 4 월 2 일)
- CU 쿠바 산업재산청(2020 년 4 월 23 일)
- IN 인도 특허청(2020 년 4 월 2 일)
- MD 몰도바공화국 국가지식재산기관(2020 년 5 월 7 일)
- MX 멕시코 산업재산기관(2020 년 4 월 30 일)
- PA 산업재산등록총국(DIGERPI)(파나마)(2020 년 4 월 2 일)
- RO 국가발명상표청(루마니아)(2020 년 5 월 14 일)
- ZA 기업및지식재산위원회(CIPC)(남아프리카공화국)(2020 년 4 월 2 일)

각 관련 공문(PCT 공보(Gazette))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http://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더 자세한 사항은 상기 코로나 19 IP 정책 트래커의 관청별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 계속 중인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거듭 촉구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4 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우편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통신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련 문서를 오직 이메일로, 각 국제출원에 대해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단, PCT 관련 문서는 ePCT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의 경우 PATENTSCOPE 에서도 확인 가능).

따라서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에 대해 아직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지 않은 PCT 출원인이나 대리인께서는 국제사무국의 당부대로 하루 빨리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연락용 이메일 주소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한국어)

또한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PCT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무국과 통신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 PCT 공개 일정 변동사항

### 2020 년 5 월 22 일 공개

이례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2020 년 5 월 21 일 목요일에 공개되었을 PCT 출원(및 공문(PCT 공보(Gazette)))은 2020 년 5 월 22 일 금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국내루트 개방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PCT 를 통한 특허보호 취득을 위한 국내루트를 2020 년 7 월 1 일 개방할 예정이라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서 이탈리아를 지정하거나 선택하면, 이는 해당 국제출원이 지역(유럽)특허 및 이탈리아 국내특허의 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PCT 규칙 4.9(iii)에 따른 표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대해 PCT 제 22 조제 1 항 및 제 39 조제 1 항(a)에 따라 아래 사항들이 적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이탈리아에서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임.
- 해당 국제출원의 이탈리아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이탈리아에서의 국내단계 진입 요건에 관한 추가 사항은 2020 년 7 월 1 일 이후 PCT 출원인 가이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PCT 를 통한 특허보호 취득을 위해 이탈리아 국내루트를 2020 년 7 월 1 일 개방한다는 소식과 함께,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다음의 자국 국내법과의 상충사실 통지를 2020 년 7 월 1 일부로 철회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26 의 2.3(j)에 따른 통지 (PCT 뉴스레터 2006/07 호 2 페이지)
- PCT 규칙 20.8(a)에 따른 통지 (PCT 뉴스레터 2006/07 호 1 페이지)

이에 따라,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서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대해 아래의 PCT 규칙들을 적용합니다.

- PCT 규칙 26 의 2.3(a) 내지 (i)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관련)
- PCT 규칙 20.3(a)(ii) 및 (b)(ii), 20.5(a)(ii) 및 (d) 및 20.6 (PCT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흠결, 누락 부분, 요소 또는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 관련)

또한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서는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대해 자국 국내법이 아래 규칙들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 PCT 규칙 49 의 3.1(a) 내지 (d)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
- PCT 규칙 49 의 3.2(a) 내지 (g)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또한 수리관청과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에서는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회복 신청에 대해 “적절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을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우선권회복 신청 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15 유로(EUR)의 인지세(imposta di bollo)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T)와 "우선권 회복" 및 "PCT 유보, 선언, 통보 및 상충"에 나온 표들이 각각 업데이트 됩니다.

[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toration.html) (한국어)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한국어)

## PCT 규칙 20.8(a-의 2) 및 (b-의 2)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

### 스페인 특허상표청

국제출원에서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대한 올바른 요소나 부분의 제출에 관한,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되는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리관청 및/또는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부 관청들에서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a)(ii) 및 (d)가 자국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20/04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2020/04 호에 나온 해당 관청들 외에, 스페인 특허상표청도 이 새로운 규칙들이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PCT 규칙 20.8(a-의 2) 및 20.8(b-의 2)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PCT 유보, 선언, 통지 및 상충" 표가 업데이트 됩니다.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한국어)

## PCT 규칙 개정

2019 년 9 월 30 일부터 10 월 9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51 차 PCT 동맹총회 회의에서,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될 PCT 규칙 개정사항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에 대한 내용은 지난 PCT 뉴스레터 2019/10 호와 2020/04 호에 안내되었는데, 아래에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 PCT 규칙 82 의 4: 불시의 정전이나 예정된 정비 등의 이유로 관청에서 허용하는 전자적 통신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해당 관청이 면제해 줄 수 있는 PCT 내 법적 근거를 제공.

- PCT 규칙 26 의 4: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4.11 에 규정된 출원서의 표시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PCT 내 법적 근거 제공.
- PCT 규칙 4, 12, 20(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40 의 2, 48, 51 의 2, 55 및 82 의 3: 국제출원 내 요소와 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잘못 출원된 요소나 부분을 올바른 것으로 교체하도록 허용, 또는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해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추가하도록 허용.
- PCT 규칙 15, 16, 57 및 96: 한 관청에서 다른 관청을 위해 접수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데 대한 PCT 내 법적 근거 제공.
- PCT 규칙 71 및 94: 국제예비심사기관에게 동 기관의 파일에 있는 특정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 도입. 상기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

본지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단락에서 상기 개정사항을 기술한 파워포인트(PPT) 자료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되는 개정된 PCT 규칙의 통합본은 아래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ar/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ar/texts/index.html) (아랍어)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영어)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서식 개정

출원서 서식(PCT/RO/101)과 아래의 서식들이 2020 년 7 월 1 일부로 개정됩니다.

- PCT/RO/107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관한 요구서)
- PCT/RO/114 (요소 또는 부분의 인용에 의한 보완의 확인 결정서)
- PCT/RO/118 (서류송부 통지서)
- PCT/RO/126 (인용에 의한 보완을 위한 것이 아닌 후 제출된 용지에 관한 통지서)
- PCT/IB/310 (서류송부 통지서)
- PCT/IPEA/415 (서류송부 통지서)

또한 아래의 서식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 PCT/RO/129 (국제출원일 회복 신청에 관한 통지서)
- PCT/ISA/208 (후 제출 용지와 관련한 추가 수수료 납부 요구서)
- PCT/IB/324 (규칙 4.11 에 따른 표시사항의 추가 또는 보정 요청과 관련한 통지서)

개정 및 신규 서식은 아래 페이지의 "2020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는 서식(Forms in force from 1 July 20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http://www.wipo.int/pct/en/forms/)

상기 개정사항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http://www.wipo.int/pct/en/circulars/)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2.12, 3.25 내지 3.28, 6.01, 15.11, 15.11A 내지 C, 17.13, 17.16A 및 B, 18.07, 19.50, 22.27, 22.52A 내지 D 및 22.58A 및 B 가 2020 년 7 월 1 일부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제 10 장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락 15.11D 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 (스페인어)

상기 개정사항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73 및 C. PCT 15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http://www.wipo.int/pct/en/circulars/)

## **ePCT 업데이트**

ePCT 신규 버전(ePCT 4.7)이 2020 년 4 월 23 일 출시되었습니다. 출원인을 위한 ePCT 와 수리관청, 지정관청 및 국제기관을 위한 ePCT 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81](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081)

[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_whats\\_new.pdf](http://www.wipo.int/pct/en/epct/pdf/epct_office_whats_new.pdf)

주요 신규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을 위한 ePCT 업데이트**

- 발명의 명칭: ePCT 에서 발명의 명칭은 대문자가 기본이나, 새로 생긴 “소문자 입력(Allow lower case)”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소문자로 입력해야하는 특정 글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됨.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이 “온라인 납부(online payment)” 하나로 통합되어, WIPO 의 온라인 납부 플랫폼을 통한 납부 시 해당 납부방법을 선택.

- 조사료 감면: 특정 출원인에게 해당되는 최근 변경된 조사료 감면 반영.
- 새로운 ePCT 일정(ePCT Timeline) 항목 및 ePCT 통지: ePCT 일정(ePCT Timeline)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서류의 만료일 표시. 이에 대한 ePCT 통지가 “통지사항(Notifications)” 아래 참조번호로 제공되어, 국제사무국에 인증사본을 제출하는 16 개월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 해당 내용이 수신인에게 통지.
-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일부 ePCT 액션(Action) 사용 가능(예: 수리관청에 번역문, 선언 또는 위임장 제출).

## PCT 정보 업데이트

### IT 이탈리아 (국내단계 진입 기한, 국제출원의 번역문 관련 요건, 우선권회복 신청의 수락)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되는 이탈리아 국내루트 개방, 이탈리아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및 국제출원의 번역 관련 요건에 대한 내용은 상기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국내루트 개방”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의 우선권회복 신청 수락에 관한 내용은 상기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인도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비세그라드 특허청)

2020 년 7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EUR, KRW, SGD, USD, ZAR
캐나다 지식재산청.....	USD
유럽 특허청.....	GBP, HUF, ISK, NOK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EUR
인도 특허청.....	USD
대한민국 특허청.....	AUD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	USD
북유럽 특허기구.....	ISK, NOK
스웨덴 지식재산청.....	ISK, NOK
미국 특허상표청.....	NZD, ZAR
비세그라드 특허청.....	HUF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 특허청은 새로운 PCT 규칙 40 의 2 에 따른, 2020 년 7 월 1 일 발효 시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와 함께 적용되는 추가수수료의 신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2020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수수료의 금액은 1,775 유로(EUR)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BR, CA, EP, IN, KR, RU, SE, US, XN, XV) 업데이트)

정정사항: PCT 뉴스레터 2020/04 호에 게재된 PCT 수수료표에 2020 년 6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온라인 출원 시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기관에 납부되는 조사료의 스위스 프랑(CHF) 등가액이 374 프랑(CHF)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올바른 금액은 314 프랑(CHF)입니다.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코로나 19 위기가 PCT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웨비나

추가 내용은 상기 “코로나 19 위기가 PCT 에 미치는 영향”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PPT) 자료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사항을 기술한 PPT 자료를 아래에서 각각 영어 및 스페인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en/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영어)

[www.wipo.int/pct/es/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es/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스페인어)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ATENTSCOPE 소식

### WIPO, 코로나 19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에 검색기능 신설

지난 2020 년 4 월 20 일 WIPO 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맞서기 위한 혁신가들의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개특허문헌 내용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PATENTSCOPE 에 새로운 검색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코로나 19 검색기능을 통해 과학자, 공학자, 공중보건 정책입안자, 산업기관 및 일반인들은 신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감지, 예방 및 치료 개선을 위한 정보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색기능의 신설로, 코로나 19 의 감지, 예방 및 치료 관련 기술분야를 파악한 특허정보 전문가들이 특별히 만든 수십 가지 검색질의가 제공됩니다. PATENTSCOPE 는 8300 만 건 이상의 특허 및 관련 문헌을 수록하여 특허정보를 종합적으로, 여러 언어로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정확도 높은 검색결과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번역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코로나 19 검색기능으로 코로나 19 완화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혁신가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수천 건의 문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PATENTSCOPE 의 코로나 19 검색기능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covid19.jsf> (한국어)

지난 2020 년 5 월 7 일 제공된 “PATENTSCOPE 의 코로나 19 특별기능(Special Covid-19 in PATENTSCOPE)”이란 제목의 웨비나와 해당 웨비나의 PPT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12)

##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PCT) 개론

본 과정은 PCT 에 대한 온라인 원격학습 기초 과정으로(DL101PCT), PCT 시스템의 소개 및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이해도와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본 과정의 모듈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과정 수수료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무료이며 PCT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제공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_s\\_PCT\\_101K](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_s_PCT_101K) (한국어)

## 유용한 도움말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 PCT 제 19 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Q:**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저희 고객이 격리 대상이어서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의 국제사무국 제출과 관련하여 제때 지사사항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PCT 규칙 46.1 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보정서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요청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PCT 규칙 82 의 4.1 에서는 PCT 제 19 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출을 포함하여 문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등의 행위에 대한 PCT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PCT 규칙 82 의 4.1 의 규정에는 불가항력의 사유(“전쟁, 혁명, 시민폭동, 파업,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현 세계적 팬데믹이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제사무국의 해석에 대한 성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 (한국어)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접수하시려면,

- PCT 제 19 조에 따른 해당 보정서를 전자적 형식으로<sup>1</sup>, 합리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고,

<sup>1</sup> 국제사무국은 현 팬데믹 기간 동안 우편을 통한 국제출원 관련 문서의 송부를 지양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PCT 제 19 조의 보정서는 ePCT 내 전용 액션(action)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40](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40)). 단, 기한이 이미 만료한 경우에는 해당 액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ePCT 내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시고 전용 ePCT 액션이 없는 다른 유형의 문서(PCT 규칙 82 의 4 에 따른 요청서 등)도 해당 기능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아직 ePCT 시스템 로그인용 WIPO 계정을 만들지 않았고 당장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면, 아래에서 비상용 업로드

- PCT 규칙 82 의 4 에 따라 전자적 형식으로 1, PCT 규칙 46.1 에 따른 기간의 만료<sup>2</sup> 후 6 개월 이내에, 지연의 사유로 “코로나 19 관련 문제”를 들어 국제사무국에 설명서(statement)를 제출하여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PCT 규칙 82 의 4 에 따라 해당 관청, 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관련 기한이 해당 사유로 준수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무국은 코로나 19 관련 문제를 이유로 한 PCT 규칙 82 의 4 에 따른 모든 요청을 요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문자(또는 출원인)께서 거주하거나, 영업소(place of business)가 있거나, 머물고 계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상기 국제사무국의 해석에 대한 성명 참고).

다만, PCT 시스템은 상호의존적인 절차들이 많고 책임이 면제된 한 행위의 지연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위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PCT 제 19 조의 보정서가 늦게 제출되는 경우, 해당 출원은 제공개가 필요할 수 있고 임시보호(provisional protection)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 신청을 고려하고자 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PCT 제 19 조의 보정서를 참작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하는 시점에(즉, PCT 규칙 54 의 2 에 따른 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보정서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 보정서가 작성 및 제출되기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또는 필요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보통 국내단계 진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자료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 규칙 82 의 4 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요청이 전반적으로 요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된다고 해도, 정황상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한 행위의 지연을 피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좋습니다.

PCT 규칙 82 의 4 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조사에 지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행위의 수행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상황들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PCT 제 8 조에 따라 파리협약 제 4 조의 적용을 받는 우선권 기간(단, PCT 규칙에서는 해당 관청이 유보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 국제단계 기간 동안 또는 국내단계에서의 우선권회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
- 놓친 기한이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대해 국내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해당 관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 관련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고(PCT 제 48 조제 2 항, PCT 규칙 82 의 2.2), 지정국이 PCT 규칙 49.6(f)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경우가 아니면<sup>3</sup>,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은 PCT 규칙 49.6 에 따라 출원과

서비스를 통해 PDF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lang=ko> (한국어)

<sup>2</sup> PCT 규칙 46.1 에 규정된 기간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부터 2 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16 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때로 합니다. 다만, PCT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해당 기간의 만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것은 그 보정이 국제공개에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sup>3</sup> PCT 규칙 49.6(f)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대한 내용은 [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영어) 및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한국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권리의 회복을 허용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해당 국내편을 참고하시거나([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관련 국내 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PCT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에 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20/03 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PCT 업데이트

기관 및 관청을 위한 ePCT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유럽 특허청

PCT-SAFE 출원 접수 종료

유럽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 버전 2.0 시범 출시

### PCT 정보 업데이트

여러가지 수수료 변동(헝가리 지식재산청,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CN 중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EP 유럽 특허청 (전자출원)

SE 스웨덴 (관청명)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6월 | 2020/06 호

## PCT 웨비나(Webinar) 동영상 강의 추가 안내

아래 주제에 대한 한국어 동영상 및 강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PCT 하에서의 주요 보호장치(safeguards) - 2020년 7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웨비나에서는 2020년 7월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등의 실수가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웨비나와 기존 한국어 웨비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해당 발표자료에 안내된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WIPO의 PCT 웨비나 일반에 대한 문의는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시면 됩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외교회의 개최 50주년

올 6월, 1970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외교회의가 개최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당 외교회의를 통해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55 개 파리동맹 회원국과 23 개 참관국, 11 개 정부간 기구, 11 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참석 및 참여했습니다. 정부나 기구를 대표하는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토론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허협력조약과 이에 부속된 규칙은 1970 년 6 월 17 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인 1970 년 6 월 19 일 20 개국이 최종 조약문과 규칙문에 서명했고, 1970 년 말까지 15 개국이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특허협력조약 50 주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treaty/pdf/pct-diplomatic-conference1970.pdf](http://www.wipo.int/pct/en/treaty/pdf/pct-diplomatic-conference1970.pdf)

상기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특허협력조약의 배경 요약
- 외교회의가 개최되기 전 몇 년간 이루어진 준비작업
- 외교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진행된 사항
- 일부 참석자들의 흥미로운 발언 인용
- 외교회의를 촬영한 사진들

PCT 외교회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texts/washington.html](http://www.wipo.int/pct/en/texts/washington.html)

### **코로나 19 에 따른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지난 2020 년 4 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서의 발급을(서식 PCT/RO/117)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2020/04 호 참고).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이 기한을 연장하여, 2020 년 6 월 30 일까지 통지서 발급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PCT 수리관청들도 각 지역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4.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4.html) (한국어)

### **WIPO PROOF: 지식자산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증거 확립**

2020 년 5 월 27 일, WIPO 는 모든 분야의 혁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인 WIPO PROOF 를 출시했습니다. WIPO PROOF 를 통해 디지털 파일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핑거프린트(fingerprint, 즉, WIPO PROOF 토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지식자산의 디지털 파일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으며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부정조작이 불가능한 증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WIPO PROOF 는 디지털 공증 같은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WIPO PROOF 는 믿을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전 세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가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결과적으로 특허처럼 정식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되든 아니든, 구상부터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 여정에서 보호하게 해줍니다.

WIPO PROOF 는 업계 선도적인 보안 기술을 사용해 과정의 매 단계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낳을 수 있는 연구 결과와 대용량 데이터 또는 비즈니스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PO PROOF 서비스는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제공되어, WIPO PROOF 토큰 하나당 CHF 20 에서 1000 개를 번들로 구매 시 토큰당 CHF 13 의 낮은 가격이 부과됩니다.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들, 예를 들어 특허출원 관련 문서처럼 다량의 문서를 보호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WIPO PROOF 사용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https://wipoproof.wipo.int/wdts/use-cases.xhtml>

WIPO PROOF 토큰은 스위스에 소재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WIPO 의 모든 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동일한 보안이 적용됩니다. 해당 토큰은 지식재산의 사전 존재와 소유를 확립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미래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PO PROOF 에 관한 추가 내용과 그 원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ipoproof.wipo.int/wdts/>

보도자료 PR/2020/855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12.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12.html)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래 관청들의 휴무와 휴무에 따른 영향에 대한 내용이 괄호 안의 날짜의 공문(PCT 공보(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 BZ 벨리즈 지식재산청 (2020 년 6 월 11 일)
- IN 인도 특허청 (2020 년 5 월 28 일)
- MX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2020 년 6 월 11 일)
- PA 산업재산등록총국(DIGERPI)(파나마) (2020 년 6 월 18 일)
- PH 필리핀 지식재산청 (2020 년 6 월 11 일)

각 관련 공문(PCT 공보(Gazette))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http://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19 IP 정책 트래커의 관청별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covid19-policy-tracker/](http://www.wipo.int/covid19-policy-tracker/)

## PCT 뉴스레터 7-8 월 통합호

PCT 뉴스레터 다음 호는 7-8 월 통합호로 8 월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6 월호와 7-8 월 통합호 발행 사이에 PCT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PCT 관련 소식이 생기면 PCT 이메일 업데이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7-8 월 통합호 발행 전에 PCT 세미나 일정이나 PCT 수수료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내용은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됩니다.

[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http://www.wipo.int/pct/en/seminar/seminar.pdf) (PCT 세미나 일정)

[www.wipo.int/pct/en/fees.pdf](http://www.wipo.int/pct/en/fees.pdf) (PCT 수수료표)

## PCT 정보 업데이트

### KR 대한민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대한민국 특허청(KIPO)은 2020 년 7 월 1 일부로,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자가 수리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호주 특허청과 오스트리아 특허청, 일본 특허청<sup>1</sup>, 대한민국 특허청 이외에,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KR) 업데이트)

###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리오인민민주공화국 과학기술부 지식재산국은 2020 년 7 월 1 일부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민과 거주자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과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이외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B)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호주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해 KRW 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확정되어 2020 년 7 월 1 일자로 발효됩니다.

2020 년 8 월 1 일부터는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sup>1</sup> (역주) 일본어 출원인 경우에 한함.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서는 일본 특허청이 누락되었으며, 다음 호에서 정정될 예정입니다.

호주 특허청 CHF, KRW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CHF, USD

대한민국 특허청 AUD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CHF, EUR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BR, KR, RU, SG) 업데이트)

###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2020 년 8 월 1 일부터,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에서 수행하는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CHF 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 I(c)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RU) 업데이트)

### 취급료 (호주 특허청)

2020 년 8 월 1 일부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는 취급료의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AUD 323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업데이트)

## PCT 행정지침(시행세칙) 및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및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이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86, [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86.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86.pdf))을 통한 협의에 따라 2020 년 7 월 1 일부로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은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99, [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99.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99.pdf))을 통해 공표되고 2020 년 4 월 30 일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ai\\_20add.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ai_20add.pdf)

[www.wipo.int/pct/en/texts/pdf/ro\\_18add.pdf](http://www.wipo.int/pct/en/texts/pdf/ro_18add.pdf)

상기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96, [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96.pdf](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20/1596.pdf))을 통한 협의에 따른, 마찬가지로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되는 다른 최신 개정사항과 통합될 예정입니다. 각 문서는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02)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2020 년 6 월 25 일 아래와 같이 각각 공개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PCT 행정지침)

[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 PCT 출원인 가이드 업데이트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부분의 영문 버전이, 2020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 및 기타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어, 2020 년 7 월 1 일 이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규칙 개정에 관한 웨비나<sup>2</sup>

“PCT - July 2020 Rule Changes”란 제목의 웨비나 녹화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cording/7207139698340682246>

해당 녹화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PPT 자료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WIPO의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의 마티아스 라이슐레-파크 부국장이 진행하는 이 웨비나에서는 향후 변동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PCT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규칙 개정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5 호에 안내된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 통합본을 이제 (아랍어와 영어에 이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도 각 페이지 오른쪽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zh/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zh/texts/index.html) (중국어)

[www.wipo.int/pct/fr/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fr/texts/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de/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de/texts/index.html) (독일어)

[www.wipo.int/pct/ja/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ja/texts/index.html) (일본어)

[www.wipo.int/pct/pt/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pt/texts/index.html) (포르투갈어)

---

<sup>2</sup> (역주) 본 뉴스레터 첫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어 웨비나는 본 영어 웨비나의 내용 및 추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ww.wipo.int/pct/ru/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ru/texts/index.html) (러시아어)

[www.wipo.int/pct/es/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s/texts/index.html)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통합본도 아래 페이지 “other languages” 부분에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 PPT 자료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5 호에 안내된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PCT 규칙 개정사항을 설명한 PPT 자료를 이제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도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ar/texts/ppt/2020changes.pptx](http://www.wipo.int/pct/ar/texts/ppt/2020changes.pptx) (아랍어)

[www.wipo.int/pct/zh/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zh/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중국어)

[www.wipo.int/pct/ja/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ja/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일본어)

[www.wipo.int/pct/ko/texts/ppt/2020changes.pdf](http://www.wipo.int/pct/ko/texts/ppt/2020changes.pdf) (한국어)

[www.wipo.int/pct/pt/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pt/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포르투갈어)

[www.wipo.int/pct/ru/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http://www.wipo.int/pct/ru/texts/ppt/rule_changes_archive.html) (러시아어)

## 웨비나: PCT 를 통한 발명의 국제적 보호

WIPO 서비스(WIPO Services and Initiatives)에 관한 순회 웨비나(Roving Webinar) 시리즈의 일환으로 2020 년 5 월 26 일 제공된 “Protecting your inventions internationally with the PCT”란 제목의 웨비나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23](http://www.wipo.int/meetings/en/topic.jsp?group_id=323)

##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 새로 발견된 납부 요청서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 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PCT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수수료 납부 요청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그간 PCT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번 공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WPTAgency - World Patent & Trademark Agency"에서도 납부 요청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가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가 WIPO 에 제보한 여러 다른 요청서의 예시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추가 전반적인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한국어)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우선일로부터 18 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CT 제 21 조제 2 항(a)).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제 29 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 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시고, 그러한 납부 요청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께서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상기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단체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 유용한 도움말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자격(국제출원이 다른 국가의 출원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Q: 출원인(출원인 A)의 국내 수리관청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장기간 휴무여서 제가 해당 출원인을 대신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했습니다. 출원인 A 는 국가 A 의 국민이자 거주자이고, 저는 국가 A 의 특허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인 A 가 해당 출원을 국가 B 의 국민이자 거주자인 새로운 출원인(출원인 B)에게 양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출원인 B 를 대리할 권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출원과 관련하여 제가 출원인 B 를 대리할 자격이 있나요?
2. 출원인 B 가 국가 A 의 특허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도록 등록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3. 출원인 B 가 국가 B 의 특허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도록 등록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에게 대리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원인이 본인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언제나 강력히 권고되는 바입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서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할 권리와 관련하여, PCT 규칙 83.1 의 2 에 따라, 출원인(또는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출원인들 중 어느 한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PCT 계약국의, 또는 그 계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PCT 규칙 19.1(a)(iii)에 규정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한 절차를 밟을 권한을 가집니다<sup>3</sup>. 또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수리관청으로서가 아닌 다른 역할로서의 국제사무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출원과 관련한 절차를 밟을 자격을 자동적으로 가집니다.

1 번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 제출 당시에 출원인을 대리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해당 출원이 나중에 다른 출원인에게 양도되면 어떻게 되는가와 관계없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과 해당 국제기관들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해 계속해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 B 는 자신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계약국, 즉 국가 B 의, 또는 그 계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출원에 대해 계속해서 등록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경우, 출원인 변경 기록 요청을 (출원인 B 가 아닌) 질문자 본인이 하시면 출원인 B 가 서명한, 질문자를 지지하는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 90.4(d) 및 90.5(c)에 따라 위임장 제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 번 질문과 관련하여, 출원인 B 가 국가 A 에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원인 B 는 국가 A 의 관청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는 자는 선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 시 선임된 자는 PCT 규칙 83.1 의 2 에 따라, 출원인 B 가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계약국의, 또는 그 계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 번 질문과 관련하여, 출원인 B 가 국가 B 의 특허청에 대해서 절차를 밟도록 등록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기 PCT 규칙 83.1 의 2 의 요건에 따라, 국가 B 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출원인 B 는 국가 B 의 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단계 중 어느 때에도 적용됩니다.

출원인 B 가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대리인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등록되도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사무국의 위임장 면제는 출원 시 출원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는 상황에까지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에 대한 판단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내관청이나 지역관청에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출원이 국가 A 의 국내관청에 제출되었다면, 출원인 B 는 질문자를 대리인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관청이나 지역관청에 출원하는 경우, PCT 규칙 90.1 에 따라, 이 대리인은 국제출원이 제출된 해당 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리인은, 새로운

<sup>3</sup> PCT 규칙 19.1(b)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즉, 국내관청이나 지역관청이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국제사무국이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위해 해당 국가를 대신하여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한을 가짐.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와 관계없이, 출원이 제출된 국내/지역 수리관청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리를 가지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의 PCT 출원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filing/filing.html](http://www.wipo.int/pct/ko/filing/filing.html) (한국어)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싱가포르, 브라질)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엘살바도르 국가등록센터(CNR),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시작 예정

스페인 특허상표청, **PCT 다이렉트 서비스(PCT Direct Service)** 시행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R** 브라질 (전송수단)

**CA** 캐나다 (통신수단)

**GT** 과테말라 (위치 및 우편주소, 팩스번호)

**SV** 엘살바도르 (전자출원)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이스라엘 특허청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7-8월 | 2020/07-08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하는 PCT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에 대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의 코로나 19 관련 기간 연장 종료

2020년 4월 9일 게시된 공지문에서([www.wipo.int/pct/ko/covid\\_19/82quater.pdf](http://www.wipo.int/pct/ko/covid_19/82quater.pdf))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통지서(서식 PCT/RO/117)의 발급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PCT 출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단행되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2020년 5월 27일자 후속 공지문에서([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4.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4.html)) 해당 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4월 9일 공지한 바와 같이, 요청이 있을 시 특정 PCT 기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PCT 규칙 82의 4.1을 계속 적용하는 한편, 필요한 PCT 수수료를 미납한 데 대해 서식 PCT/RO/117을 2020년 7월 1일부터 다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PCT 규칙 16의 2.2에 따른 모든 가산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납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아래 PCT 웹사이트에 2020년 7월 3일 게재되었습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7.html](http://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17.html)

##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의 4.2)

PCT 동맹총회는 지난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1차 회의에서, 다른 규칙 개정사항들과 함께, 관청이나 기관에서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특정 기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면제에 관한 새로운 PCT 규칙 82 의 4.2 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되었습니다.

## 국제사무국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사무국은, ePCT 시스템(강력한 인증 유무와 무관)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사용 중이었으나 국제사무국의 특정 업무일에 최소 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2020 년 7 월 1 일부터 PCT 규칙 82 의 4.2(a)에 따라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PCT 규칙 및 PCT 행정지침(시행세칙)에 규정된 모든 기한에 적용됩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에게 발급한 요구서나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에도 적용됩니다. 단, 우선권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PCT 규칙 82 의 4.2(a)에 따라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1. 특정 날짜에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
2.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제사무국의 익일 업무일에 해당 행위 수행.

위 1 번 및 2 번 조건이 충족되고, 또한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가 해당 날짜에 최소 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이 인정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상기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결정사항을 서식 PCT/IB/345 를 통해,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서식 PCT/RO/132 를 통해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합니다.

국제사무국의 해당 공지 전문은 아래 중 2020 년 7 월 16 일자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http://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본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2(IB)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또한, PCT 규칙 82 의 4.2(a)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다음의 기간 동안 ePCT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함을 PCT 사용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 2020 년 7 월 12 일 오전 7:20(중앙유럽 서머타임(CEST))부터 2020 년 7 월 13 일 오전 7:52 (CEST)까지.

이로 인해 PCT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께서는 PCT 규칙 82 의 4.2 에 따라, 상기 조건들에 준거하여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국제사무국이 전자출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

국제출원의 전자출원 시, 해당 출원을 제출하는 수리관청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pdf 및 .xml 형식으로 된 여러 파일이 자동 생성되고 출원 패키지로 합쳐집니다. 출원서나 수수료계산서와 같은 PDF 파일 생성에 이용되는 서지정보 외에, XML 파일에도 국제사무국의 처리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명단계에서 사용자가 WIPO 계정 고객 ID(WIPO Account Customer ID)와 eOwnership 코드를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게 하는, ePCT 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PCT-SAFE, EPO 온라인출원 소프트웨어, JPO-PAS)를 통해 국제출원을 전자출원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기록원본을 수리하면 출원 패키지의 XML 파일 중 하나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ePCT 에서 해당 WIPO 계정 소유자에게 접근권한이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에 직접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XML 파일들이 전자출원 패키지에 자동 포함됩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ePCT 나 PCT-SAFE 로 전자출원하거나 수리관청으로서의 이스라엘 특허청에 ePCT 로 전자출원 시, XML 파일이 해당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데이터 패키지 압축파일(zip file)에 포함됩니다. 압축파일은 이후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기록원본과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수리관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예: EFS-Web)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이 출원인이 제공하지 않아서 또는 수리관청이 기록원본 송부 시 누락시켜서 데이터 패키지 압축파일을 수신하지 못하면, 일부 절차가 수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객 ID 와 eOwnership 코드가 누락되면 국제사무국 시스템에서 ePCT 접근권한이 자동 생성되지 못하고 출원인은 eOwnership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및 상환이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수수료 관련 절차들에 있어서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파일들에 포함된 XML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관청 및/또는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의 경우, 출원 시 제공되는 모든 수수료 관련 지침이 전자출원 패키지에 포함되어, 해당 패키지 없이는 자동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출원 시 ePCT 에서의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18](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518)

## 2019 년 PCT 통계자료

### 2020 년 PCT 연례보고서

2020 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19 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 년 PCT 출원(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포함)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국제특허제도인 PCT 의 운영실적 및 2018 년(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년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 특별 테마는 "상위 50 개 PCT 클러스터"로, PCT 출원 행위를 PCT 출원서에 이름이 포함된 발명자의 소재지에 기반하여 국가 아래 단위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PCT 출원에 기재된 혁신들의 발생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activity/index.html](http://www.wipo.int/pct/ko/activity/index.html)

PCT 연례보고서 요약본이 곧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 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뉴스레터 한국어 및 일본어 축약본: 신규 이메일 통지**

PCT 뉴스레터 각 호에서 발췌한 내용이 예전부터 아래 PCT 웹사이트에서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http://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한국어)

[www.wipo.int/pct/ja/newslett/index.html](http://www.wipo.int/pct/ja/newslett/index.html) (일본어)

발췌내용은 보통 PCT 세미나 일정표(PCT Seminar Calendar),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PCT 계약국 및 두자리 국가코드(PCT Contracting States and Two-Letter Codes), 및 "PCT 정보 업데이트"의 일부 부분 외에, PCT 뉴스레터 영문판에 게재된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PCT 사용자들은 PCT 뉴스레터 각 호의 한국어 및 일본어 축약본이 나왔음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려면 아래 WIPO 의 구독 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https://www3.wipo.int/newsletters/ko/#pct\\_newsletter](https://www3.wipo.int/newsletters/ko/#pct_newsletter) (한국어)

[https://www3.wipo.int/newsletters/ja/#pct\\_newsletter](https://www3.wipo.int/newsletters/ja/#pct_newsletter) (일본어)

뉴스레터 축약본은 아래에서 중국어로도 제공됩니다.

[www.wipo.int/pct/zh/newslett/index.html](http://www.wipo.int/pct/zh/newslett/index.html) (중국어)

중국어 축약본 안내 이메일 구독 신청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ww3.wipo.int/newsletters/zh/#pct\\_newsletter](http://www3.wipo.int/newsletters/zh/#pct_newsletter) (중국어)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sup>1</sup>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제기관들은 시범사업 운영단계에서 약 460 건의 출원을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출원들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로 출원되었고, 서열목록과 발명의 단일성 결여와 같은 다양한 기술분야와 특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운영단계는 2020 년 6 월 30 일 종료되어, 2020 년 7 월 1 일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출원은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접수된 출원들은 국내단계 처리까지 추적하여 협력심사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KR 대한민국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 정정사항)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6 호 영문판 5 페이지에, 수리관청으로서의 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들 목록에서 일본 특허청이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과학기술부 지식재산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주소도 통지했습니다. 변경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856-21) 213 470 (내선번호 154)

이메일: dip.laopdr@gmail.com  
kkeobounphanh@yahoo.co.uk  
saybandith30@gmail.com

인터넷: <http://dip.gov.la/>

또한, 과학기술부 지식재산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2020 년 7 월 7 일부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민과 거주자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과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외에,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sup>1</sup>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LA) 및 C(IB)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필리핀 지식재산청, 일본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지식재산청, 미국 특허상표청)

2020 년 9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CHF, EUR, SGD, USD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USD
미국 특허상표청 .....	NZD, ZAR

2020 년 10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증가액이 변경됩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 .....	EUR
유럽 특허청.....	NOK
일본 특허청.....	CHF
필리핀 지식재산청 .....	CHF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	CHF
북유럽 특허기구 .....	NOK
스웨덴 지식재산청 .....	NOK
미국 특허상표청 .....	CHF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U, CA, CL, EP, JP, PH, RU, SE, US, XN) 업데이트)

**취급료 (호주 특허청, 일본 특허청)**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호주 특허청에 AUD 로 납부되는 취급료 증가액이 2020 년 9 월 1 일부로 변경되고, 일본 특허청에 JPY 로 납부되는 취급료 증가액이 2020 년 10 월 1 일부로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각각 AUD 307 및 JPY 22,900 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JP)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내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내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hase)" 자료의 영어 버전이 2020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2/pdf/gdvol2.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2/pdf/gdvol2.pdf)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자료도 2020 년 7 월 1 일부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PCT 뉴스레터 2020/06 호에서 안내).

### PCT 자주 묻는 질문

2020 년 4 월자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PCT 시스템의 최근 변동사항 일부가 반영되어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ar/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ar/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아랍어)

[www.wipo.int/pct/zh/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zh/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중국어)

[www.wipo.int/pct/en/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en/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영어)

[www.wipo.int/pct/fr/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fr/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de/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de/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독일어)

[www.wipo.int/pct/ja/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ja/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일본어)

[www.wipo.int/pct/ko/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ko/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한국어)

[www.wipo.int/pct/pt/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pt/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포르투갈어)

[www.wipo.int/pct/ru/doc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ru/docs/faqs_about_the_pct.pdf) (러시아어)

[www.wipo.int/pct/es/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http://www.wipo.int/pct/es/basic_facts/faqs_about_the_pct.pdf) (스페인어)

### PCT 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웨비나

"2020 년 7 월 1 일자 PCT 규칙 개정사항"이란 제목의 웨비나 녹화자료를 영어에 이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웨비나는 예정된 변동사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PCT 사용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웨비나 영상과 웨비나에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르투갈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6968](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6968)

포르투갈어 웨비나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pt/seminar/webinars/index.html](http://www.wipo.int/pct/pt/seminar/webinars/index.html)

해당 녹화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PCT 실무그룹 회의 자료

2020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13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

##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외교회의 개최 50 주년

PCT 뉴스레터 2020/06 호에 안내된 PCT 에 관한 외교회의 개최 50 주년 관련 내용에 이어, 1970 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 기요시 아사무라(Kiyoshi Asamura)의 인터뷰 영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ultimedia-video/en/pct/video/asamura.mp4](http://www.wipo.int/multimedia-video/en/pct/video/asamura.mp4)

## 유용한 도움말

###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요소가 잘못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의 제출

**Q:** 2019 년 7 월 16 일에 제출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수리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에 2020 년 7 월 14 일 즉,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기 이틀 전에 국제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요약서와 발명의 설명, 도면은 올바르게 제출했는데 청구범위를 다른 출원에서 가져와 잘못 제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출원일이 나중 날짜로 변경되지 않고 또한 해당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도 해당 출원에서 잘못된 청구범위를 올바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제출된 잘못된 청구범위가 공개되나요?

**A:** 출원인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데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구범위(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올바른 청구범위가 포함된 국제출원을 즉시 새로 제출하고 원출원을 취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새로 제정된 PCT 규칙 20.5 의 2(b) 및 (c)에 따라, 2020 년 7 월 1 일 또는 이날 이후에 제출된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수리관청에 청구범위를 올바른 것으로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청구범위가 나중 일자에 수리관청에 수리되면, 국제출원일은 수리관청이 올바른 청구범위를 수리한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야 잘못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위의 두 방법 중 무엇을 택하든 (우선권회복 신청 없이는) 해당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다시 제출한 국제출원의 접수일이 우선권 기간이 지나서가 되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올바른 청구범위의 수리일이 국제출원일이 되는데 이 날도 역시 우선권 기간이 지난 일자입니다.

처음에 부여된 국제출원일을 유지해야 한다면, 새로 제정된 PCT 규칙 20.5 의 2(d)에 따라,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있어, 해당 요소나 부분이 해당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용에 의해 해당 요소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출원에서 누락된 부분의 제출에 관한 PCT 규칙 20.5 와 비교). 다시 말해, "올바른 청구범위"가 선출원에 실제로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PCT 규칙 20.7 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한(즉, PCT 제 11 조제 1 항(iii)에 언급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수리관청에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2 개월<sup>3)</sup> 내에 PCT 규칙 4.18 에 따라 국제출원에 새로운 (올바른) 청구범위를 인용에 의해 보완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수리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에 제출하면, 올바른 청구범위를 출원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PCT 규칙 20.6 에 따라 다음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sup>4</sup>

- 우선권 주장의 대상인 선출원에 포함된 그대로의 해당 요소의 전체를 포함하는 용지(들)
- 우선권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출원의 출원 시 기준 사본

수리관청이 올바른 청구범위가 선출원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PCT 규칙 20.6(b)에 따라 해당 청구범위는 PCT 제 11 조제 1 항(iii)에 언급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처음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에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처음의 국제출원일이 유지됩니다.

PCT 규칙 20.5(c), 20.5 의 2(c), 20.5(d) 또는 20.5 의 2(d)에 따라 누락부분이나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이 나중에 제출되고, 또한 국제조사기관이 해당 누락부분이나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이 국제출원에 포함되었다는, 또는 PCT 제 11 조제 1 항(iii)에 언급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처음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에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고 나서야 받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PCT 규칙 40 의 2.1 에 따라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영국 지식재산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인 유럽 특허청은 잘못 제출된 요소에 대해 이와 같은 추가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청구범위 전체가 잘못 제출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이 올바른 청구범위가 인용에 의해 보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시점에 처음의 잘못 제출된 청구범위에 대해 이미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 받으실 수

<sup>3</sup> 또는 수리관청으로부터 PCT 규칙 20.5 의 2(a)에 따른 요구서를 받은 경우 요구서의 날짜로부터 2 개월

<sup>4</sup> 선출원의 언어가 국제출원의 언어와 상이하거나 국제출원의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PCT 규칙 20.6(a)(iii) 참조

있습니다(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EPO's Administrative Council)의 2020 년 3 월 27 일자 결정 참조(OJ EPO 2020, A36)([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20/04/a36/2020-a36.pdf](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20/04/a36/2020-a36.pdf))).

PCT 규칙 20.6(b)에 따라 올바른 청구범위가 인용에 의해 보완된 경우, 잘못 제출된 청구범위는 해당 출원에 남아있게 됩니다(PCT 규칙 20.5 의 2(d)). 수리관청은 잘못 제출된 용지에 "ERRONEOUSLY FILED (RULE 20.5bis)"라고 표시하고 해당 용지를 (다시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청구범위 끝으로 이동시켜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국제사무국은 해당 용지를 해당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PATENTSCOPE 에 공개합니다. 이는 PCT 규칙 20.5 의 2(c)에 따른 경우 즉, 출원인이 (인용에 의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고) 잘못 제출된 요소를 올바른 것으로 단순 교체하도록 수리관청에 요청하여 잘못 제출된 요소가 올바른 요소로 교체되고 해당 출원에서 삭제되어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공개되거나 PATENTSCOPE 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sup>5</sup>.

수리관청 및/또는 지정(또는 선택)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부 관청은, 새로 제정된 규칙 20.5 의 2(a)(ii) 및 (d)가 자국 국내법과 상충한다고 PCT 규칙 20.8(a 의 2) 및 (b 의 2)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PCT 규칙 20.8(a) 또는 (b)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상충사실을 통지한 관청의 경우, 이러한 상충사실의 통지가 PCT 규칙 20.8(a 의 2) 및 (b 의 2)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이처럼 모든 수리관청이 잘못 제출된 요소를 인용에 의해 보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정관청이 잘못 제출된 요소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허용하는 수리관청의 결정을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충사실을 이와 같이 통지한 관청들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ko/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한국어)

PCT 규칙 20.8(a 의 2)에 따라 이와 같은 통지를 한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제출한 출원인의 경우, 해당 출원인은 PCT 규칙 19.4(a)(iii)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것을 해당 수리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잘못된 요소나 부분이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인용에 의해 보완하도록 허용합니다. 특정 지정관청이 그러한 유보를 했다고 해서 올바른 청구범위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출원일이 늦춰지는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출원인은 해당 지정관청에 대해 해당 청구범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청에 대해 우선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소개 부분의 단락 6.024 내지 6.03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sup>5</sup> PCT 규칙 20.5 의 2(c)에 따른 요청이 PCT 제 11 조 제 1 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출원인은 수리관청이 올바른 요소를 접수한 날로 변경됨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 및 특허및기업등록기관(PACRA)(잠비아), 전자적 형식으로 국제출원 수리 및 처리 시작 예정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양방향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이집트 특허청-일본 특허청)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오스트리아 특허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필리핀 지식재산청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PCT 정보 업데이트

여러 가지 수수료 변동(호주 특허청, 헝가리 지식재산청,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일본 특허청,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AP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 (전자출원)

AT 오스트리아 특허청 (위치 및 우편주소, 팩스번호)

**BY** 벨라루스 (통신수단, 필요한 사본 수, 수수료)

**IN** 인도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IT** 이탈리아 (보호의 종류,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국제공개 후 임시보호,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적용기준, 우선권 회복 신청 수수료,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요건, 국내단계 진입 요건 요약)

**PT** 포르투갈 (수수료)

**RS** 세르비아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RU** 러시아연방 (인터넷 주소)

**UG** 우간다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ZM** 특허및기업등록기관(PACRA)(잠비아) (전자출원)

### **특정 PCT 수수료 감면 대상**

유럽 특허청의 특정 수수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 75% 감면 적용 가능 대상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9월 | 2020/09 호

## PCT 온라인 세미나 안내

아시아 지역 P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래 주제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Update on Recent and Future Developments in the PCT System

- 일시: 2020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
- 주요 내용: PCT 규칙 개정 사항, ePCT, 코로나 19 관련 업데이트 등
- 진행 언어: 영어
- 참가비: 무료
- 상세 안내: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 등록 바로 가기: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948491916694763787>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세미나와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대한민국 특허청: 2020년 8월 17일 휴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i)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에 만료되었습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0 년 10 월 1 일부로,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것과 같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GT, HN, IB, IL, IN,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다음의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변동됩니다.

송달료:	.....	USD 109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sup>1</sup>	.....	USD	54
항공우편 추가요금:	.....	USD	1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2020 년 11 월 1 일부터,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에서 수행하는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CHF 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 I(c)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업데이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및 "국내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hase)" 부분의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버전이 2020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s/guide/index.html) (스페인어)

<sup>1</sup> PCT 규칙 17.1(b)에 따라 우선권서류가 국제출원을 위해 준비된 경우와, 해당 관청이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국내단계 소개” 부분의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국제단계 소개” 부분의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회의 자료

2020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31 차 PCT 기술협력위원회(PCT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 회의 및 제 13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료를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 (PCT 기술협력위원회)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 (PCT 실무그룹)

## 온라인 PCT 세미나 고급과정: PCT 시스템의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통상적으로 WIPO 본부에서 개최되는 WIPO 의 연례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PCT 이용자께서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계신 PCT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날짜 및 시간에 세미나를 세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각 지역별로 다음의 날짜/시간(제네바 기준)에 제공됩니다.

2020 년 10 월 14 일(09:00-11:30 CET): 유럽/중동/아프리카 참석자

2020 년 10 월 28 일(16:30-19:00 CET): 아메리카 참석자

2020 년 11 월 2 일(08:30-11:00 CET)<sup>2</sup>: 아시아 참석자

해당 과정은 국제사무국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며, PCT 시스템에 친숙한 특허업무 종사자와 변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
- 최근 및 향후 PCT 추가 변동사항
- ePCT: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

각 세미나에는 참석자들이 PCT 에 관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등록수수료가 없으며, 자세한 등록방법은 곧 아래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www.wipo.int/meetings/en/](http://www.wipo.int/meetings/en/)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추가 사항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

<sup>2</sup> (역주)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 발행 이후 세미나 시간이 변경되어, 영문판에 나온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제 3 자 공개<sup>3</sup>

**Q:**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PCT 제 34 조에 따라 제 국제출원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2 장)가 제 3 자에게 공개되는지, 그렇다면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다른 서류도 제 3 자에게 공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특허협력조약(PCT 제 38 조)에서 국제예비심사 파일이 기밀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예비심사 파일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2 장)(IPRP(제 2 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라고도 불림)가 작성된 후에는 더 이상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 파일의 제 3 자 공개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의 배경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제 38 조는 국제사무국(IB)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어떠한 자 또는 당국에게도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RP(제 2 장)가 작성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려면 출원인의 청구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IPRP(제 2 장)가 작성된 후에는, IPEA 가 PCT 규칙 71.1(a)에 따라 출원인과 IB 에 사본을 송부하고, IB 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에 선택관청에 사본을 송부합니다(PCT 제 36 조 및 규칙 73.2(a)). 그러면 선택관청은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열람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94.3).

2004 년 1 월 PCT 규칙 94.1(c)가 발효되어 IB 가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IPRP(제 2 장)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관청에서 IB 가 IPRP(제 2 장)를 PATENTSCOPE ([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http://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는데,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규칙 71.1(b) 및 94.1(c) 개정사항에 따라,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IPEA 가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접수하거나 작성한 모든 기타 서류도,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에 PATENTSCOPE 에 공개됩니다<sup>4</sup>. 모든 IPEA 가 새로운 PCT 규칙 71.1(b)를 시행할 기술적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IB 에 이러한 서류를 송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예비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인에게 송부하거나 출원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는 이제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IPEA 가 출원인과 IB 에 송부하는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실제 서류들 중,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부는 IPRP(제 2 장) 자체에 부속되고, 일부는 따로 송부됩니다.

다음의 서류는 PCT 규칙 70.16 의 규정과 같이 IPRP(제 2 장)에 부속됩니다.

- PCT 제 34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66.8 에 따라 제출된 대체서면과, 이에 수반되는 서신
-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46.5 에 따라 제출된 대체서면과, 이에 수반되는 서신

<sup>3</sup> (역주) 본 뉴스레터 번역본에서는 편의상 ‘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정보에의 접근(access)에 관한 것으로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와는 구분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up>4</sup> IB 는 파일에 포함된 정보 중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PCT 규칙 48.2(I)에 따라 국제공개에서 생략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음. 이는 파일에 포함된 서류 중 이러한 요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적용.

- PCT 규칙 91.1(b)(iii)에 따라 IPEA 에서 승인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26.4 에 따른 대체서면과<sup>5</sup>, 이에 수반되는 서신

단, 이러한 대체서면이 후속하는 대체서면 또는 보정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반복되어 PCT 규칙 66.8(b)에 규정된 전체 용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IPRP(제 2 장)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앞서 언급된, 후속하는 대체서면 또는 보정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반복되어 전체 용지가 취소된 대체서면
- 이러한 대체된 또는 반복된 서면과 관련된 모든 서신

이 두 서류는, 해당 대체 또는 반복 보정이 출원 시 국제출원의 공개 범위를 벗어난다고 IPEA 가 간주하는 경우, 또는 보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신이 해당 보정에 수반되지 않았고 IPRP(제 2 장)가 해당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작성된 경우에는 IPRP(제 2 장)에 부속됩니다.

개정된 PCT 규칙 94.1(c)에 따라 IB 는,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IPEA 가 접수하거나 작성한 다음의 서류들의 사본을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PATENTSCOPE 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PCT 행정지침(시행세칙) 신규 섹션 602 의 2 에 나와 있습니다<sup>6,7</sup>.

- IPEA 가 발행한 견해서
- PCT 규칙 66.3 에 따라 출원인이 IPEA 에 제출한, 의견을 포함한 서신(출원인이 IPEA 의 견해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PCT 제 34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한 대체서면 및 해당 보정에 수반되는 서신. 대체된 이와 같은 보정 및 서신 포함.
- IPEA 의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납부 요구
-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 요구 및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한 PCT 규칙 68.3(c)에 따른 이의신청(출원인이 해당 이의신청이 IPRP(제 2 장)에 부속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느냐의 여부와 무관)
- IPEA 가 송부하기를 원하는, 파일에 포함된 기타 서류

IPRP(제 2 장)와 그 부속서류 및 그에 수반되는 서신들 외에, IB 는 PCT 규칙 93 의 2 에 따라 선택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IPRP(제 2 장) 분문의 영어 번역문도 PATENTSCOPE 에 공개합니다(부속서류의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이는 출원인이 준비하여 해당 선택관청에 송부해야 함).

개정된 규칙은 국제예비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선택관청과 대중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선택관청은 2020 년 7 월 1 일 전에는 IPEA 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던 해당 서류들을 포함해,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PATENTSCOPE 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지역 관청들의 불필요한 업무중복이 사라지면서 국내단계 처리가 용이해지고, 해당 관청들이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시고 나서 그로 인해 제 2 장 파일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면, IPRP(제 2 장)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sup>5</sup> 정정 요청이 IPRP(제 2 장)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해당 IPRP(제 2 장)는 그와 같이 명시해야 하고, 해당 정정과 관련된 서면은 해당 IPRP(제 2 장)에 부속됨.

<sup>6</sup> [www.wipo.int/pct/en/texts/ai/s602bis.html](http://www.wipo.int/pct/en/texts/ai/s602bis.html)

<sup>7</sup> 특정 상황에서, IPRP(제 2 장)에 부속되는 서류와 별도로 송부되는 서류의 유형이 접칠 수 있음.

그러면 IPEA 는 해당 출원의 처리를 중단하고 IPRP(제 2 장)는 작성되지 않습니다(PCT 규칙 90 의 2.6(c)).

IPRP(제 2 장)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10.074 내지 10.083 및 11.074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IPEA 의 파일 공개에 관한 최근 PCT 규칙 개정사항의 배경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서 PCT/WG/12/12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5263](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5263)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 참여

신규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유라시아 특허청과 핀란드)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일본 특허청

파리협약: 영국의 선언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G** 불가리아 (수수료)

**CU** 쿠바 (수수료)

**DE** 독일 (서류의 우편송부의 증거,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 출원된 국내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EE** 에스토니아 (전화 및 팩스 번호)

**NL** 네덜란드 (우편주소)

**PT** 포르투갈 (수수료)

**US** 미국 (수수료)

**ZM** 잠비아 (위치,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국제형조사 및 임시보호 관련 규정)

조사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미국 특허상표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미국 특허상표청)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10월 | 2020/10호

## PCT 뉴스레터 구독 안내

WIPO 웹사이트에서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을 직접 구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 웹페이지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에서 우측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매월 뉴스레터가 발간될 때에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배포 역시 계속 이루어집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이전 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PCT 실무그룹

2020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제 13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하이브리드 회의(hybrid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개최된 첫 WIPO 기술 회의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및 여러 대표단은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했고, 또 여러 대표단은 물리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한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78개 회원국(2019년 대비 18개 증가)의 대표가 물리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하루에 두 시간씩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에게 6개 언어로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논의된 요점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에서의 WIPO 표준 ST.26의 이행

실무그룹은 PCT 규칙 개정사항을 제출하여 2021년 상반기에 개최될 PCT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표현을 위한 WIPO 표준 ST.26을 2022년 1월 1일 또는 그날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문서 PCT/WG/13/8 참조).

## 보충적 국제조사 검토

실무그룹은 이용률이 낮아도 현재의 보충적 국제조사제도를 유지할 것을 PCT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 일반적 문제(disruption) 상황에서의 PCT 보호책 강화

실무그룹은, 관청이 소재한 지역에서 일반적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관청이 PCT 규칙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하자는 유럽 특허청, 프랑스, 스위스 및 영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논의 후 실무그룹은 유럽 특허청과 그 외 공동 제안국 대표단에 금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작하여 차기 실무그룹 회의에 개정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국제사무국이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사무국이 2020 년 4 월 9 일 발행한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해석에 대한 설명과 PCT 관행에 대한 변경 권고사항(PCT 뉴스레터 2020/04 호 참조)의 이행에 있어 관청들의 경험을 평가하고, 실무그룹 차기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문서 PCT/WG/13/10 참조).

## 기타 사항

실무그룹은 다음과 관련한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 특허 심사관 훈련 조정(문서 PCT/WG/13/6 Rev.)
- PCT 에 따른 기술원조 조정(문서 PCT/WG/13/7 Rev.)
- PCT 최소문헌 전담반(문서 PCT/WG/13/12)

## 요약서 및 관련 문서

의장의 요약서(문서 PCT/WG/13/14)를 아래 WIPO 웹페이지에서 작업 문서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

회의에 관한 보고서 초안도 적절한 때에 상기 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PCT 기술협력위원회

제 31 차 PCT 기술협력위원회(PCT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 회의가 2020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제네바에서 제 13 차 PCT 실무그룹 회의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PCT 기술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특허기구(EAPO)를 PCT 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할 것을 PCT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추가 사항은 아래에서 의장의 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USPTO), ePCT 이용 촉진을 위해 규칙 개정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인들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할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출원인들의 ePCT 이용을 촉진하고자 해외출원 허가(foreign filing license) 규칙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0 년 9 월 30 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전의 해외출원 허가 규칙에서는, **해외 PCT 수리관청**(예를 들어,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준비하기 위해 ePCT 로 기술정보(technical data)를 내보내는(export) 것은 허용했지만,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국제출원**을 준비하기 위해 ePCT 시스템(스위스에 서버 소재)에 기술정보를 입력하여 내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PCT 뉴스레터 2016/05 호 5 페이지 참조). 해외출원 허가에서 기술정보의 내보내기 문제를 규제하기 때문에, 미국 특허상표청에서는 동 관청의 해외출원 허가에서 수리관청으로서의 동 관청에 국제출원 준비를 위해 ePCT 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해외로 기술정보를 내보내는 것도 추가 허용하도록 해외출원 허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상기 규칙 변경으로 이제 미국의 PCT 출원인들은 (출원인들이 필요한 해외출원 허가를 취득했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해외출원 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내용은 내보내지 않는다면) ePCT 를 통해 국제출원을 준비한 후 .zip 파일을 생성하여, ePCT 로 기술정보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기존의 우려 없이,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동 관청의 출원 시스템인 EFS-Web 또는 Patent Center 를 통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허가 규칙 개정사항에 관한 추가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30/2020-18743/facilitating-the-use-of-the-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s-epct-system-to-prepare](http://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30/2020-18743/facilitating-the-use-of-the-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s-epct-system-to-prepare)

ePCT 출원의 이점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ePCT 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ePCT 에는 명세서를 포함한 국제출원의 전체 내용에 대한 완전한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 출원서의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과 비교해 검증만 하는 PCT-SAFE 와는 달리, ePCT 는 모든 작성 규칙 검증 및 수수료 계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며, 이들을 최신 PCT 기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준비된 출원은 출원 후 보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낮고, 따라서 출원 처리도 출원인과 수리관청, 국제사무국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 ePCT 는 다른 WIPO 온라인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검증하고 편의성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ePCT 에 입력된 우선권 주장 데이터를, 해당 인증사본이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DAS 와 비교해 교차점검함으로써 검증하고, 출원 후에 ePCT 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요청을 제출하여 국제사무국이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FS-Web 을 통해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기 위해) ePCT 에서 출원 패키지가 생성되기도 전에, 새로 생성된 국제출원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WIPO 계정과 연결되어 ePCT 접근권한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거나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필요시 출원 전에 다른 사용자들과 접근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기록원본을 수리하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국제사무국이 보유한 해당 파일에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 파일 관리, 특정 기한 모니터링, 전자적 형식의 문서의 전자적 업로드, (규칙 92 의 2 요청 등과 같은) 검증 기능이 내재된 액션(Action) 등, ePCT 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ePCT 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landing.xhtml?lang=ko>

**온라인 PCT 세미나 고급과정: PCT 시스템의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통상적으로 WIPO 본부에서 개최되는 WIPO 의 연례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올해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많은 PCT 이용자께서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계신 PCT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날짜 및 시간에 세미나가 영어로 세 번 제공되었습니다. 녹음자료 및 발표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해당 과정은 국제사무국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였으며, PCT 시스템에 친숙한 특허업무 종사자와 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
- 최근 및 향후 PCT 추가 변동사항
- ePCT: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

**PCT 정보 업데이트**

조사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이집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인도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필리핀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특허청,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지식재산국,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북유럽 특허기구, 스페인 특허상표청,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기관(VPI))

2020 년 11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	KRW
오스트리아 특허청	.....	KRW, SGD, USD
이집트 특허청	.....	CHF
유럽 특허청	.....	JPY, SEK, SGD, USD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	USD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	USD
인도 특허청	.....	EUR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EUR
필리핀 지식재산청	.....	EUR
대한민국 특허청	.....	AUD, EUR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지식재산국	.....	USD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	EUR
북유럽 특허기구	.....	SEK, USD

스페인 특허상표청 .....	USD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	USD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	USD
비세그라드 특허기관(VPI) .....	USD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2020 년 12 월 1 일부터, 호주 특허청에서 수행한 국제조사에 대해 미달러(USD)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수수료표 I(b)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T, AU, CL, EG, EP, ES, FI, IN, KR, PH, RU, SE, SG, TR, UA, XN, XV) 업데이트)

###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책자)

2020 년 7 월 1 일자로 업데이트 된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을 포함한 출판물(WIPO 출판물 274)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책자에 관한 내용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ublications.mail@wipo.int).

아래의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상기 언어들로 된 WIPO 출판물 274(조약과 규칙 모두 포함)의 PDF 버전을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505](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505)

-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각각의 PDF 버전(영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texts/index.html](http://www.wipo.int/pct/ko/texts/index.html)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관청에서의 전자적 통신수단 이용 불가능에 관한 정보

PCT 공개언어 10 개 모두로 이용 가능한 아래의 새로운 PCT 웹페이지에서는, 새로운 PCT 규칙 82 의 4.2(a)를 적용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으며 해당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 관청들에서 발생한, 전자적 통신수단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wipo.int/pct/ko/texts/unavailability.html](http://www.wipo.int/pct/ko/texts/unavailability.html)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지역 특허법의 특정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링크

국내/지역 특허법의 특정 부분들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PCT 출원인 가이드 페이지 오른쪽에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Certain Aspects of National/Regional Patent Laws, Revised Annex II of document SCP/12/3 Rev.2: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라는 제목의 해당 페이지에는 다음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정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자명성), 공지예외주장 기간(grace period), 개시 요건(sufficiency of disclosure), 특허부여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에서 제외되는 대상 및 권리의 예외 및 제한. 해당 내용은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의 틀 안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세미나 자료

PCT 절차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세미나 자료가, 마지막 버전이 나온 이후 새로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과 몇몇 실무상 관행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영어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seminar/basic\\_1/document.pdf](http://www.wipo.int/pct/en/seminar/basic_1/document.pdf)

다른 언어로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WIPO 펄(Pearl): 팬데믹에 맞설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 19 관련 용어 추가

WIPO의 다국어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WIPO 펄에 약 1500 개의 코로나 19 관련 용어가 10 개 언어로 새로 추가되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법 및 진단법을 개발하려는 혁신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용어들과 이들의 타국어 대응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조성하고, 전 세계에서 작성되는 특허문헌을 비롯한 공공자료들에 포함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PO 펄에서는 PCT 출원서 및 국내 특허문헌에서 과생된 수 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를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 개(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모두로 제공합니다. WIPO 펄에는 현재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147 개의 주요 개념이 포함되고 각 개념이 10 개 언어로 제공되어 총 1500 개에 가까운 용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생물학과 의학(특히 전염병학과 진단법), 공중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주요 용어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언어들 간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 추가된 용어들과 관련하여, 프란시스 거리 (전) WIP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점점 더 국제화 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코로나 19 관련 용어를 검증된 다국어로 정리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다른 언어로 탄생된 업적을 평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지식 기반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WIPO 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진정 전 세계적 도전 과제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을 발견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진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추가 내용과 WIPO 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0/86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21.html](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21.html)

WIPO 펄은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http://www.wipo.int/reference/ko/wipopearl/index.html) (한국어)

## 유용한 도움말

### 출원 시 출원서에 포함되었으나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요청으로 나중에 변경되는 발명자의 주소의 제 3 자 공개

**Q:** 발명자의 자택 주소를 출원서 제 3 기재란에 기재한 국제출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명자(출원인은 아님)가 제게 자신의 자택 주소를 자신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인 직장 주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제가 국제사무국에 PCT 규칙 92 의 2 에 따라 이러한 변경사항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제 3 자가 국제출원 공개 후에 해당 자택 주소를 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발명자의 주소와 관련하여,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발명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제출되면, 국제출원 공개 시 발명자의 이름은 PATENTSCOPE 에서 해당 국제출원의 “PCT 서지정보” 탭에 공개되고(PCT 규칙 48.2(b)(i) 참고), 발명자의 주소는 서지정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발명자의 주소도 서지정보 탭에 공개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09 년 1 월부터는 발명자의 주소 정보가 해당 탭에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주소 정보가 인터넷 검색 엔진에 나타나거나 색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국제출원 첫 페이지와 발명자의 주소가 포함된 기타 특정 문서들에서는 오직 이미지 형식으로만 제 3 자가 발명자의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기록된 관련 서류” 탭에 있는 출원서(PCT/RO/101)와 PCT 규칙 4.17(i)에 따른 발명자의 신원에 관한 선언과 PCT 규칙 4.17(iv)에 따른 발명자 선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선언 모두 PATENTSCOPE 의 “공개된 국제출원” 탭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발명자의 주소 변경 기록 요청이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공개된 국제출원의 첫 페이지에 발명자의 자택 주소가 아닌 직장 주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PATENTSCOPE 의 “국제사무국에 기록된 관련 서류” 탭에서 발명자의 주소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새로운 주소 뿐만 아니라 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주소도 포함) 서식 PCT/IB/306(기록변경 통지서)이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형식이 아닌 이미지 형식으로만 제 3 자에게 공개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PCT 규칙 4.17(iv)(발명자의 주소 요구)에 따른 발명자 선언을 제출했고 해당 서식에 발명자의 자택 주소가 기재된 경우, 해당 주소도 PCT 규칙 48.2(a)(x)에 따라 PATENTSCOPE 에서, 제 3 자가 검색 불가능한 이미지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자택 주소는 일단 국제출원에 포함되고 나면 해당 출원에서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PCT 규칙 94.1(e)에 따라 파일 열람 대상에서 특정 민감 정보는 생략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요청이 수락됩니다. 이 같은 생략을 정당화하려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sup>1</sup>,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6/07-08 호를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국제출원 전에, 흠결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PCT 에서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지정국(또는 선택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PCT

<sup>1</sup> PCT 규칙 94.1(e)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해당 정보가 명백히 공중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가 누군가의 개인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정보를 입수할 만한 공중의 지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함.

체약국의 대부분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출원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로써 국내단계에서 문제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에 발명자의 직장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보통 가능하지만, 해당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자택 주소 대신 직장 주소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기재 요건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2/12 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www.wipo.int/pct/en/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n/guide/index.html))에도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가 제공되어야 하는 때에 관한 지정된(또는 선택된) 각 체약국이나 정부 간 기구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유럽 특허청: 2020 년 10 월 24 일, 유럽 특허청의 모든 온라인 출원 서비스 일시적 이용불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경제개발통상부 산하 국가특허및정보센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기관 및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산하 국가지식재산및혁신부, 전자적 형식의 국제출원 수리 및 처리 시작 예정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유럽 특허청 시범사업, 2020 년 12 월 1 일 시작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국가산업재산기관 (프랑스)

국가산업재산기관 (브라질)

### PCT 정보 업데이트

CZ 체코공화국 (관청명)

DE 독일 (대리인 관련 요건)

GB 영국 (통신수단)

HR 크로아티아 (보호의 종류, 임시 보호,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수수료)

KG 키르기스스탄 (전자출원)

NL 네덜란드 (우편주소 - 정정사항)

RO 루마니아 (수수료)

S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수단, 종이 사본 수, 국제출원 사본 제출, 수수료)

TJ 타지키스탄 (관청명,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서류의 우편송부 증거, 보호의 종류, 국제형조사 관련 규정, 국제조사 후 임시 보호, 전자출원)

**UZ** 우즈베키스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VN** 베트남 (이메일/인터넷 주소)

**ZM** 잠비아 (보호의 종류)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11월 | 2020/11호

## PCT 뉴스레터 구독 안내

WIPO 웹사이트에서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을 직접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 웹페이지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에서 우측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매월 뉴스레터가 발간될 때에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배포 역시 계속 이루어집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이전 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WIPO IP 포털: PCT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메뉴 기능

지난 2019년 9월, WIPO IP 포털이 출시되었습니다(PCT 뉴스레터 2019/09호 참고). 실용적이고 편리한 최신 WIPO IP 포털에서 여러분의 PCT 출원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WIPO IP 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몇 주에 걸쳐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PCT 온라인 서비스들의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무엇이 바뀌는가

- PCT 시스템 서비스들을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Search, File & Manage, Pay)로 분류하여, 서비스들을 보다 쉽고 보다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하위 카테고리 “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 Online Platform”이 새로 포함됩니다.
- 온라인 결제를 위한 링크가 “Pay” 카테고리에 추가되어 PCT 시스템 수수료 결제가 보다 쉬워집니다.
- “Bookmarks” 메뉴 카테고리나 위젯(로그인 후 이용 가능)은 이름이 “My Favorites”로 변경됩니다. “My Favorites”를 통해 여러분이 북마크한 서비스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NEW” 아이콘이 추가되어 메뉴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표시해줍니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WIPO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관련 중요 내용의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안내 공간이 현재 추가되어 있습니다.

IP 포털 메뉴의 새 버전이 출시되면, 새로운 기능들과 기타 WIPO IP 포털에서 바꾸고 싶으신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30 초 가량 소요되는 아래 설문조사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s://www.surveygizmo.com/s3/5593898/Survey-WIPO-IP-Portal-english>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IP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pportal.wipo.int/>

또는, 아래에서 문의사항이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ip\\_portal](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ip_portal)

##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올해 연말 국제공개 일정

2020 년 12 월부터 2021 년 1 월까지 국제사무국의 주말 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년 12 월 25 일(금)  
 2020 년 12 월 31 일(목)  
 2021 년 1 월 1 일(금)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0 년 12 월 28 일(월)부터 30 일(수)까지 업무를 하고, 2021 년 1 월 4 일(월)에 평소처럼 업무를 재개합니다.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와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PCT 운영 서비스(PCT Operations Service)의 운영 일자와 국제공개 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정보 서비스

PCT 정보 서비스는 2020 년 12 월 25 일부터 2021 년 1 월 1 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 후 2021 년 1 월 4 일(월) 9:00 시(CET)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단, 연휴기간 동안 PCT 정보 서비스에 전화를 걸면(전화번호: (+41-22) 338 83 38) 녹음된 안내음성을 통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PCT 정보 서비스에서는 국제출원의 출원과 이후 PCT 국제단계에서 진행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를 처리합니다(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는 PCT 운영 서비스에 연락).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infoline.html>

###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 및 PCT 운영 서비스

연말 연휴기간 동안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와 PCT 운영 서비스의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년 12 월 25 일(금): 휴무  
 2020 년 12 월 28 일(월)부터 30 일(수):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2020 년 12 월 31 일(목) 및 2021 년 1 월 1 일(금): 휴무  
 2021 년 1 월 4 일(월) 및 그 이후: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는 출원의 전자적 준비/제출/관리를 위한 서비스들과 관련된 문의를 처리합니다. 문의 대상 서비스들은 ePCT (<https://pct.wipo.int>), PCT-SAFE (<https://www.wipo.int/pct-safe/en/index.html>) 및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https://www.wipo.int/das/en/>) 입니다.

- PCT 운영 서비스는 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를 처리합니다. PCT 운영 서비스는 10 개 팀에서 관할합니다. 담당 팀의 대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으시려면 서식 PCT/IB/301 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

## 국제공개 일정

PCT 출원은 다가오는 연휴기간 중 2020 년 12 월 24 일(목)에는 평소대로 공개되나, 그 다음 주에는 하루 앞당겨 2020 년 12 월 30 일(수)에 공개됩니다. 해당 출원들의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동사항의 접수 마감시한은 각각 2020 년 12 월 8 일(화)과 2020 년 12 월 15 일(화) 자정(CET)입니다.

## PCT 행정지침(시행세칙) 개정

PCT 행정지침(시행세칙)의 부속서 F(국제 출원의 전자적 형태의 출원 및 처리를 위한 표준)의 부록 I(전자적 PCT 출원 표준을 위한 XML DTD)의 단락 5.13(견해서) 개정사항이 2021 년 1 월 1 일 발효됩니다.

해당 개정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에 대한 문서유형정의(DTD) 변동사항이 포함됩니다. 해당 개정은 견해서를 XML 로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해서가 작성되지 않은 청구범위를 구조적으로 특정가능하게 함
- 인용문헌의 카테고리 및 해당 인용문헌에 대한 심사관의 견해를 포함 가능하게 함

행정지침(시행세칙)의 부속서 F 의 부록 I 의 2021 년 1 월 1 일 발효 예정인 개정 통합본은 문서 PCT/AI/DTD/14 로 작성되어 아래에서 각각 영어와 불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pdf/ai\\_dtd\\_14.pdf](https://www.wipo.int/pct/en/texts/pdf/ai_dtd_14.pdf) (영어)

[https://www.wipo.int/pct/fr/texts/pdf/ai\\_dtd\\_14.pdf](https://www.wipo.int/pct/fr/texts/pdf/ai_dtd_14.pdf) (프랑스어)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 (다수 관청)

2021 년 1 월 1 일부터, 국제출원료 및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열거된 전자출원 감면액(해당 시),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의 일부 통화의 증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바대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들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http://www.wipo.int/pct/guide/en/))의 아래 부속서들에 반영됩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T, AU, AZ, BA, BG, BH, BW, BY, BZ, CA, CL, CR, CU, CY, CZ, DE, DJ, DK, DO, EA, EC, EE, EG, EP, ES, FI, FR, GB, GE, GH, GR, GT, HN, HU, IB, IE, IL, IN, IS, IT, JO, JP, KE, KG, KH, KZ, LR, LT, LU, LV, MD, ME, MT, MW, MX, NI, NL, NO, NZ, OM, PA, PE, PG, PH, PT, QA, RO, RS, RU, SA, SC, SE, SG, SI, SK, SV, SY, TJ, TM, TT, UA, UG, US, UZ, ZA, ZM, ZW

- 부속서 **D** (국제조사기관): 전체
- 부속서 **SISA** (국제조사기관(보충적 조사)): 전체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AT, AU, CA, CL, EG, EP, ES, FI, IL, IN, JP, KR, PH, RU, SE, SG, UA, US, XN, XV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1 년 1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의 EUR 등가액과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EUR 93 USD [변동 없음]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EUR [변동 없음] USD 55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IB) 업데이트)

**K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보호의 종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정(또는 선택)되는 경우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총국의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 및 우편주소: Kinmaul Dong No. 1  
 Pipha Street  
 Moranbong District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전화: (850-2) 381 85 44

팩스: (850-2) 381 44 10

이메일: io520@star-co.net.kp

또한, 발명총국은 통신수단을 통한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이제 팩스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서류를 접수한다는 변동사항을 통지했습니다. 나아가, 통신수단으로 문서 제출 시, 위임장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PCT 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의 종류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특허, 발명자증, 소발명자증 및 소특허가 부여됩니다.

또한, 발명총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정(또는 선택)되는 경우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에 관한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했습니다.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함. PCT 제 22 조 또는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한의 만료 시 발명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동 관청은 출원인에게 요구일로부터 2 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KP) 및 “Types of Protection Available via the PCT in PCT Contracting States” (<https://www.wipo.int/pct/en/texts/typesprotection.html>) 표 업데이트)

##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온라인 PCT 세미나 고급과정: “PCT 시스템의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녹음자료 및 PDF 자료)

“PCT 시스템의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제로 한 WIPO의 연례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영어로 세 번 진행되었습니다(2020년 10월 14일, 10월 18일, 11월 2일).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등록하면 해당 웨비나의 녹음자료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페이지 링크와 PDF 자료는 아래 PCT 웨비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국제사무국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한 해당 과정은 PCT 시스템에 친숙한 특허업무 종사자와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다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7월 1일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
- 최근 및 향후 PCT 추가 변동사항
- ePCT: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의 비용 - ePCT에서 각 수수료의 기한 확인하기

**Q:** 처음으로 국제출원을 하는데, ePCT를 통해 출원하려고 합니다.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PCT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PCT 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ePCT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ePCT에서 출원인에게 수수료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줍니다.

국제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송달료(해당 시)(PCT 규칙 14), 국제출원료(PCT 규칙 15), 그리고 조사료(PCT 규칙 16)가 있습니다.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와 우선권회복에 대한 수수료처럼 해당 시 납부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ePCT에서 모든 정확한 수수료 금액이 계산되기 전에, 전체 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ePCT로 국제출원 준비 시 나타나는 순서대로 작성).

#### 1. 국제출원을 희망하는 수리관청 선택

보통 모든 온라인 출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수리관청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다음의 수수료들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송달료(대부분의 관청에서 부과하며<sup>1</sup> 어느 관청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상이<sup>2</sup>) 및 해당 수리관청에서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
- 조사료(수리관청을 선택하면 해당 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도 정해짐(아래 참조)).

국제사무국을 위해 납부되는 국제출원료의 주요 부분은 어느 수리관청을 선택하든지 항상 금액이 동일하지만(현재 CHF 1,330), 선택한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통화로 등가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수리관청이 복수의 통화를 포함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송달료는 해당 관청의 지역 통화로 납부하고 국제출원료는 다른 통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통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우선권 주장 기재(해당 시)

수리관청에 우선권서류의 인증사본을 준비해 국제사무국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수리관청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수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sup>3</sup>. 또한, 우선권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금액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수료의 금액은 선택한 수리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 3. 출원인(들)의 국적 및 거주국 기재

ePCT 에서 “이름” 부분에 정보를 입력할 때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국을 기재하면 선택한 수리관청의 관할 여부가 확인됩니다(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모든 PCT 체약국의 국민 및/또는 거주자를 위한 수리관청의 역할 수행)을 제외한 모든 다른 수리관청은 각각 특정 국가의 국민 및/또는 거주자를 위해서만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지를 기재하면, ePCT 에서 특정 PCT 체약국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수수료 감면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감면이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출원인 **모두**의 국적과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sup>1</sup> 송달료를 부과하지 않는 수리관청 알제리, 중국, 인도(온라인 출원 시), 모로코, 몽골, 슬로베니아, 터키

<sup>2</sup> 단, 극소수의 수리관청은 ePCT 에서 송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ePCT 에서 송달료를 산정할 수 없음. 출원하고자 하는 수리관청이 이에 해당되면 ePCT 에서 ‘수수료’ 부분에 다음의 메시지가 나타남

“중요- 해당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ePCT 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납부 금액은 해당 수리관청에 문의하십시오. PCT 출원인 가이드의 부속서 C 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출원 시 자동 수수료 계산 용지에 “0”이 나타나고, 출원 후 해당 수리관청에서 수수료 납부 안내를 위해 서식 PCT/RO102(소정의 수수료 납부 관련 통지서)를 발행

<sup>3</sup> 특정 수리관청의 경우 우선권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밖에 산정하지 못할 수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참고. 우선권서류 제출 시 WIPO DA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일부 기탁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있을 수 있음).

#### 4. 해당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복수인 경우, 국제조사기관 선택<sup>4</sup>

상기와 같이, 선택된 수리관청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들)이 결정됩니다. 여러 수리관청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관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sup>5</sup>. 각 국제조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료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사료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이 대학 또는 기타 학술기관, 소기업 또는 초소기업,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해당 시 출원인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ePCT 에서 명시하여 적용 가능한 수수료 감면이 ePCT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을 조사할 언어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출원 언어도 조사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 출원 본문 추가

출원의 본문(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해당 시))을 첨부하면 ePCT 에서 해당 출원의 페이지 수를 계산합니다. 특정 수리관청의 경우(이스라엘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ePCT 에 아무 내용도 추가할 수 없어, 대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해당 시) 각각의 페이지 수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PCT 규칙 4.17 에 따른 선언을 포함하여 출원서(PCT/RO/101)의 페이지 수도 전체 페이지수에 포함되며 입력된 서지정보에 따라 ePCT 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출원이 용지 30 매를 초과하면 ePCT 에서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이것이 국제출원료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자출원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ePCT 출원에 부여되는,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온라인 출원 감면액이 당연히,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이미지 기반 형식(PDF)이 아닌 문자 기반 형식(DOCX 또는 XML)으로 제공하면 보다 유리한 수수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해당 신규 국제출원에 그때까지 입력된 데이터와 서류를 토대로 ePCT 에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화면에서 “수수료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금액이 나타나고, “수수료 용지 미리보기”를 통해 수수료 용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초안을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수수료도 바뀔 수 있는데, ePCT 에서 자동으로 수수료를 다시 산정해줍니다. 아래의 예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인을 추가하면, 최초 산정에 적용 가능했던 수수료 감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sup>4</sup> 선택한 수리관청이 복수의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 시 출원인이 거주자인 국가와 국민인 국가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짐

<sup>5</sup>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으로 선택된 경우 관할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출원인이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체약국의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제출된 경우 해당 국제출원의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되었을 기관과 동일(PCT 규칙35.3 및59.1(b)).

- 출원 언어를 바꾸거나 출원인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 선택한 수리관청이 관할 수리관청이 아니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수리관청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으로 변경할 수 있음(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체약국의 국민/거주자인 출원인의 모든 출원 언어를 허용. ePCT 에서 출원 초안 작성 후에는 수리관청을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으로만 변경 가능).
- 출원 언어를 바꾸거나 출원인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 국제조사기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이에 따라 조사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전체 페이지 수가 바뀌면, 30 매 초과분에 대한 용지당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또는 최초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ePCT 로 국제출원을 할 상황이 안 되는 출원인들께서는, PCT 웹사이트에서 PCT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수수료표(<https://www.wipo.int/pct/en/fees.pdf>) 및 PCT 출원인 가이드 내 관청별 부속서(<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수수료에 관한 자료에 관한 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12 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리조약 및 특허협력조약: 영국의 선언

#### 부다페스트 조약

##### 사우디아라비아 가입

#####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을 요약하고 동 조약의 주요 이점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서(WO/INF/12 Rev. 27)를 아래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영어)

[https://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s://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프랑스어)

[https://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https://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스페인어)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지식재산부 등록국(수단), 전자 형식으로 국제출원 접수 및 처리 개시 예정

유럽 특허청(EPO) 온라인 서비스 일시적 이용 중단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벨기에 지식재산청(OPRI)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새로운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 **PCT 정보 업데이트**

**B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수료)

**BZ** 벨리즈 (위치 및 우편주소)

**CA** 캐나다 (수수료)

**CR** 코스타리카 (관청명, 이메일 주소)

**HN** 온두라스 (이메일/인터넷 주소, 종이 사본 수, 수수료)

**IS** 아이슬란드 (수수료)

**MC** 모나코 (전화번호, 이메일/인터넷주소)

**PT** 포르투갈 (수수료)

**SD** 수단 (전자출원)

**SK** 슬로바키아 (수수료, 대리인 관련 요건,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특별 요건)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캐나다 지식재산청)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을 위한 자료

**PATENTSCOPE** 소식

이스라엘 및 영국의 국내 특허문헌 조회내용(Dossier)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12월 | 2020/12호

## PCT 교육 비디오 한국어 자막 추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Learn the PCT 비디오 시리즈 중 에피소드 1 내지 3에 대해 한국어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에피소드 1: <https://youtu.be/88Kpu4aL7Fs>

에피소드 2: [https://youtu.be/8dVuT8q\\_mT4](https://youtu.be/8dVuT8q_mT4)

에피소드 3: <https://youtu.be/vozlfbxZfkY>

유튜브 동영상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접속하시는 기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cc 버튼을 눌러 자막을 켜시면 됩니다. 나머지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추후 한국어 자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PCT 뉴스레터 구독 안내

WIPO 웹사이트에서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을 직접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 웹페이지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에서 우측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매일 뉴스레터가 발간될 때에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한 배포 역시 계속 이루어집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이전 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 국제사무국: 전자출원 서비스용 이메일 주소

다음의 이메일 주소들은 2021 년 1 월 11 월부로 사용이 중단되어 더 이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pct@wipo.int, pct-safe@wipo.int, ept@wipo.int. 앞으로 국제사무국의 전자출원 서비스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ct.eservices@wipo.int.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WIPO Fee Transfer Service)

지난 2019 년 10 월 PCT 동맹총회는 PCT 규칙 15, 16, 57 및 96 을 개정하여, 한 관청에서 다른 관청을 위해 수납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데 대한 PCT 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관청들 간 수수료 거래 건수를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문서 PCT/WG/12/20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https://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6911)

2020 년 7 월 1 일부터 모든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보충적 국제조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참여관청”으로서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PCT 규칙 96.2 에 준거하여, 또한 PCT 시행세칙(행정지침) 부속서 G 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https://www.wipo.int/pct/en/texts/ai/annex\\_g.html](https://www.wipo.int/pct/en/texts/ai/annex_g.html)), PCT 수수료가 한 관청(“수납관청(collecting Office)”)에서 국제사무국을 거쳐 다른 관청(“수혜관청(beneficiary Office)”)으로 전달됩니다.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은 2020 년 11 월 26 일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 255 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WIPO 수수료 전달 서비스에 따른 참여관청별 PCT 수수료 전달내역(2020 년 11 월 20 일 현재)
- 월별 기한이 표시된 2021 년도 공동일정표. 참여 수납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수수료 내역을 확정 및 송부해야 하는 기한과, 국제사무국이 수납 및 송부할 전달 대상 수수료 목록과 해당 목록의 수수료 액수를 확정하고 이들을 수납 및 송부해야 하는 기한이 표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상기 일자의 공식 공지(PCT 공보(Gazett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https://www.wipo.int/pct/en/official_notices/officialnotices.pdf)

### 국제사무국 휴무일

PCT 규칙 80.5 에 따른 기간의 계산상, 202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국제사무국의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2021 년 1 월 1 일

2021 년 4 월 2 일

- 2021 년 4 월 5 일
- 2021 년 5 월 13 일
- 2021 년 5 월 24 일
- 2021 년 9 월 9 일
- 2021 년 12 월 24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상기 일자들은 국제사무국에만 해당되며 국내 또는 지역관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청들의 2021 년 휴무일은, 해당 정보가 국제사무국에 제공된 경우 아래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오스트리아 특허청, 호주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2021 년 2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 .....	ZAR
호주 특허청 .....	ZAR
미국 특허상표청 .....	ZAR

상기 변동금액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AU 및 US) 업데이트)

### 이례적 휴무일

####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청은 뮌헨과 헤이그, 베를린에 소재한 유럽 특허청의 출원 관청들이 문서접수를 하지 않는 날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년 1 월 4 일부터 8 일까지가 추가 휴무일로 포함됩니다(2021 년 1 월 6 일은 뮌헨 소재 관청의 휴무일로 이미 정한 바 있음.) 추가 내용은 아래 유럽 특허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president-notices/archive/20201216.html>

본 내용은 추후 유럽 특허청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PO)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2019/2020 년 WIPO PCT 사용자 설문조사

PCT 의 전 부문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공 서비스 분야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네 번째 PCT 사용자 설문조사가 2019/2020 년에 시행되었습니다.

PCT 공개언어 10 개로 진행된 해당 설문조사에는 1800 명이 넘는 응답자가 참여했습니다. 설문문항은 특히 아래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 P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국제사무국의 PCT 출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ePCT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용도와 만족도
- WIPO 의 다양한 PCT 서비스 관련 문의하기
- WIPO 웹사이트에 제공된 PCT 정보와 PC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응답자들은 의견을 작성하고 개선 희망부분을 기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PCT 사용자의 88%가 WIPO 가 제공하는 PCT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매우 만족(36%)하거나 만족(52%)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본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activity/pct\\_user\\_survey\\_2019\\_2020.pdf](https://www.wipo.int/pct/en/activity/pct_user_survey_2019_2020.pdf)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셨다면, PCT 사용자께서는 언제든지 PCT 법무 및 사용자 지원국(PCT Legal and User Relations Division)에 아래 이메일로 의견이나 피드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pct.legal@wipo.int](mailto:pct.legal@wipo.int)

다음 번 설문조사는 2021/2022 년에 시행됩니다.

## PCT 개요에 관한 비디오

“특허협력조약(PCT) -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라는 제목의 PCT 개요에 관한 새로운 비디오를 PCT 공개언어 10 개로(화면 상단 우측에서 해당 언어선택), PCT 메인 페이지(<https://www.wipo.int/pct/ko>) 및 아래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24.html](https://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24.html)

해당 비디오는 특허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지만, PCT 가 혁신가들이 해외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기업인들과 개인 발명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들도 해당 비디오를 통해, 고객들이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디오는 PCT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PCT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PCT 에 관한 기초 원격 학습 과정 이용 중단

WIPO 아카데미의 연례 휴무로 인해, PCT 에 관한 기초 원격 학습 과정(PCT(특허협력조약) 개론(DL101PCT)) 및 지식재산에 관한 다른 WIPO 아카데미의 온라인 과정들에 대한 신규 접수가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규 등록 접수는 아래에서 2021 년 1 월 중순에 재개됩니다.

[https://www.wipo.int/academy/en/courses/distance\\_learning/](https://www.wipo.int/academy/en/courses/distance_learning/)

## WIPO Sequence: 서열목록을 출원하는 특허 출원인들을 위한 새로운 툴

2022 년 1 월 1 일부터, XML 형식의 아미노산 및 핵산염기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WIPO 표준 ST.26 이 국제, 국내 또는 지역 수준의 특허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에 적용됩니다.

지난 달 WIPO 는, 특허 출원인들이 WIPO 표준 ST.26 에 따른 아미노산 및 핵산염기 서열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인 WIPO Sequence 를 출시했습니다. 나아가 WIPO 는, 출원된 서열목록이 WIPO 표준 ST.26 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특허청들을 대상으로 WIPO Sequence Validator 도 출시합니다. IP 관청들이 각기 다른 제작 툴을 제공한 결과 서열목록의 형식이 서로 달라진 현 상황과 달리, WIPO Sequence 는 모든 출원인이 일관된 형식으로 서열목록을 출원할 수 있게 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WIPO Sequence 는 여러 가지로 개선 작업 중이며, 새로운 공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베타 버전이 2021 년 시험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열목록이 포함된 국제출원을 정기적으로 출원하시는 PCT 사용자께서는 WIPO Sequence 데스크톱 툴을 다운받아 보시고 다음의 주소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tandards@wipo.int](mailto:standards@wipo.int).

WIPO Sequence 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standards/en/news/2020/news\\_0002.html](https://www.wipo.int/standards/en/news/2020/news_0002.html)

WIPO Sequence 설치 팩과 사용자 매뉴얼은 아래 WIPO Sequence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standards/en/sequence/index.html>

WIPO 에서는 출원인 여러분과 관청 직원들을 위해 WIPO 표준 ST.26 및 WIPO Sequence 에 대한 교육 과정과 웨비나를 2021 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WIPO INSPIRE: 새로운 특허정보 툴

WIPO 의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운 플랫폼인 WIPO INSPIRE(Index of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 Reports, <https://inspire.wipo.int/>)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WIPO INSPIRE 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하고 객관적이며 구조적인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전 세계 특허 관련 상용, 국내 또는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고 검색할 수 있고, 특허 심사에 있어서든 R&D 관련 결정에 있어서든, 업무상 가장 적합한 특허 검색 툴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WIPO INSPIRE 는 강력하면서도 사용이 쉬운 다양한 기능을 특허정보 이용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WIPO INSPIRE 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 특허 검색 및 분석 툴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들 저장
- 최대 4 개 데이터베이스들의 기능 비교
-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들의 포함 범위를 보여주는 양방향 지도. 이를 통해 어느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특정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지 한 눈에 확인 가능.

WIPO INSPIRE 는 WIPO 의 특허등록포털(Patent Register Portal) 및 eTISC(online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 플랫폼과 통합되어, 사용자들이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등록부에 대한 정보와, 특허정보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해당 툴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기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wipo.int/tisc/en/news/2020/news\\_0004.html](https://www.wipo.int/tisc/en/news/2020/news_0004.html)

WIPO INSPIRE 이용 방법에 대한 웨비나 녹화 자료를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0288](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60288)

## 2020 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2020 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영문)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526>

해당 연례 보고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 품종 보호, 지리적 표시,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을 조망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약 150 개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과 WIPO 에서 제공한 2019 년도 출원, 등록 및 갱신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데이터 및 업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0/871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27.html](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27.html)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의 비용 - WIPO 의 온라인 자료들을 통해 납부 대상 수수료 확인하기

*Q: 처음으로 국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출원을 하기 전에 PCT 수수료 금액이 얼마가 될 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 먼저, ePCT 로 PCT 출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ePCT 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ePCT 에서 출원인에게 수수료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줍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PCT 뉴스레터 2020/11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11\\_2020.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11_2020.pdf) (한국어)

ePCT 로 출원할 계획이 없으시거나 질문자께서 선택하신 수리관청이 그러한 출원을 접수하지 않아서 ePCT 로 출원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질문자께서 특허 보호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PCT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주요 수수료는 아래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fees.pdf>

또한 각 관청별로, PCT 출원인 가이드의 부속서들에 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국제단계에서 특정 상황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 국내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국내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속서들에는 해당 관청들의 요건 및 기타 특이사항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래에서 인덱스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는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되고, PCT 출원인 가이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전에, 먼저 국제출원의 제출 시 예외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만 납부하는 수수료는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주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서 해당 수수료가 나오는 부분과 PCT 출원인 가이드의 관련 부속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표 I(a) 및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아래 수수료들(및 전자출원 시 전자출원 수수료 감면액)은 수수료표(PCT Fee Tables)의 표 I(a)의 1 열에 나온 각 수리관청(RO) 옆에 나와있습니다. PCT 규칙 19 에 따라, 출원인은 본인이 거주자 및/또는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에 출원하거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거주국과 다른 국가의 국민인 경우,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지역관청에 출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수리관청”)에 각 수리관청별로 어느 국가의 국민과 거주자를 위해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안내).

송달료(PCT 규칙 14) - 송달료(2 열)는, 해당 시<sup>1</sup>, 국제출원을 제출한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수리관청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보통 현지통화로 납부합니다.

국제출원료(PCT 규칙 15)(출원 용지 30 매 초과 시 납부해야 하는 용지당 수수료 포함)<sup>2</sup> - 국제출원료(3 열 및 4 열)는 국제사무국을 위하여 수리관청이 수납하며, 수리관청이 정한 통화(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 스위스프랑 외 해당 수리관청이 허용하는 통화의 등가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sup>1</sup> 송달료를 부과하지 않는 수리관청 알제리 중국 인도(전자출원시), 모로코 몽골 슬로베니아 터키

<sup>2</sup> 오랫동안 국제출원료와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는 각각 1330\* 스위스프랑 및 15 스위스프랑으로 고정 (\*역주: 본 뉴스레터의 영문 원본에 1300 스위스프랑으로 기재된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전자출원 감면액 - 5 열과 7 열에 PCT 규칙에 부속하는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항목 4(a), (b) 및 (c)에 명시된 전자적 형식 중 하나로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경우([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tax.html#\\_S](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tax.html#_S))에 받을 수 있는 국제출원료 감면액이 나와 있습니다. 출원인이 선택하는 제출 형식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전자출원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각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전자출원 형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의 해당 부분 확인). 스위스프랑 외 다른 통화의 감면액은 역시 적용 가능한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기 수수료들과 감면액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의 해당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예를 들어,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의 인증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도록 수리관청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납부)나 PCT 규칙 26의 2.3(d)에 따른 우선권 회복 신청을 위한 수수료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수리관청에 납부해야 할 수 있는 기타 수수료도 나와 있습니다.

###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표 I(b) 및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조사료(PCT 규칙 16) - 먼저 어느 국제조사기관(들)이 출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인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들)은, 표 I(b)에서 출원인이 선택하신 관할 수리관청에 해당하는 행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는 국제조사기관을 위하여 수리관청이 수납하며 그 액수는 국제조사기관이 자국 통화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료의 등가액은 해당 관청을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특정 통화로 정해집니다. 각 국제조사기관에 납부하는 해당 조사료 금액과 다른 적용 가능한 통화로 납부하는 등가액은, 수수료표(Fee Tables)의 표 I(b)나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조사가 수행될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부과하고, 일부 국제조사기관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조사료 외에 (추가조사료와 이의신청료 등) 다른 수수료도 국제조사기관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는 (송달료 관련 소수의 예외상황 외에는) 모든 경우에 납부해야 하며, 수리관청에서 출원을 수리한 지 한 달 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표 I(c) 및 II 및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및 E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수수료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T 규칙 45의 2에 따라 출원에 대한 보충적 국제조사를 요청하기로 하면, 보충적조사료와 보충적조사 취급료를 납부해야 하고(표 I(c) 또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의 해당부분 참고), PCT 규칙 53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예비심사료와 취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표 II 또는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의 해당부분 참고). 특정 상황에서 다른 수수료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부속서 SISA 및 E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PCT 출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했으면 국내단계 진입 시 각 해당 국내관청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따라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 지정(또는 선택)관청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해당 국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감면/반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출원 시 국제출원료가 감면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많은 수리관청에서 송달료를 감면해주고, 한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는 조사료와 예비심사료를 감면해주고, 여러 지정(또는 선택)관청에서는 온라인 출원 시 국내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른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들)의 국적 및 거주지에 따른 수수료 감면:** 국제출원에 이름이 포함된 출원인 모두가 특정 국가의 국민과 거주자인 경우, 국제출원료와 보충적조사 취급료, 취급료가 감면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_january.pdf](https://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_january.pdf)

또한, 여러 관청에서 특정 국가의 출원인에게 송달료 및/또는 조사료와 예비심사료를 감면해줍니다.

**출원인 유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일부 관청은, 예를 들어, 소기업, 학술기관 또는 정부단체와 같은 특정 유형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송달료, 조사료와 예비심사료, 및/또는 국내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이전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감면/반환:** 일부 관청은, 해당 관청이 선 조사 및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주거나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 관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국제예비심사료를 낮게 부과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낮은 수수료:**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기로 했고 선택한 기관에서 보다 제한적인 보충적 국제조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조사할 문헌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국내수수료의 면제, 감면 또는 반환:** 많은 국내(또는 지역)관청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출원인이 출원하거나 특정 국제기관이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한 경우, 국내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국제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수수료표(Fee Tables)의 해당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수수료 감면 또는 반환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D 및 E 와 국내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수수료 관련 추가 내용

PCT 수수료에 관한 추가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5.184 내지 5.199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guide/ip05.html#\\_fees](https://www.wipo.int/pct/en/guide/ip05.html#_fees)

PCT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에 대한 통합된 정보와 이에 포함된 다른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ko/fees/index.html> (한국어)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유럽 특허청(EPO)

#### 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불가리아공화국 특허청, EPO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원된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접수 중단 예정

#### PCT 정보 업데이트

BG 불가리아 (전자출원)

BH 바레인 (전화번호, 수수료)

EA 유라시아 특허청 (수수료)

GM 감비아 (관청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인터넷 주소)

IL 이스라엘 (수수료)

LS 레소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MN 몽골 (위치 및 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QA 카타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RS 세르비아공화국 (수수료)

TM 투르크메니스탄 (관청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인터넷 주소)

UA 우크라이나 (관청명)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수료)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중국어로 제공되는 추가 자료

세미나 자료